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정책 수행 실태조사

연구진

박해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영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2장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안전관리의 개관	9
1. 법적 근거	9
2. 안전관리의 개념	13
3. 재난안전관리의 특징	15
제2절 안전관리정책의 의의 및 유형화	17
1. 안전관리정책의 의의	17
2. 안전관리정책의 범위 및 유형	1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4
1. 재난·안전관리제도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25
2. 재난·안전관리정책의 기능 및 역할	28
제3장 중앙부처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39
제1절 안전관리 실태분석의 개요	41
제2절 안전관리대책 실태분석	43
1. 보행자안전대책	43



2. 승강기안전대책	45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대책	47
4.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49
5. 사회복지시설안전대책	51
6. 교육시설안전대책	53
7. 유·도선안전대책	54
8. 자전거이용안전대책	56
9. 문화체육시설안전대책	58
10. 등산사고안전대책	60
11. 수상레저안전대책	61
12. 문화재안전대책	64
13. 사이버안전대책	6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69

제1절 실태분석의 개요	71
1. 조사의 대상	71
2. 조사의 분야 및 주요 내용	7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의 개관	72
1. 조직	72
2. 자치법규	76
3. 사업특성	77
제3절 광역자치단체 안전관리의 실태분석	81
1. 보행자안전	81
2. 승강기안전	83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83





4. 여름철물놀이안전	84
5. 사회복지시설안전	85
6. 교육시설안전	86
7. 자전거이용안전	87
8. 문화체육시설안전	88
9. 등산사고안전	89
10. 수상레저안전	90
11. 문화재안전	91
12. 사이버안전	92
13. 유도선안전	92
14. 농기계안전	93
제4절 기초자치단체 안전관리의 실태분석	94
1. 보행자안전	94
2. 승강기안전	96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97
4. 여름철물놀이안전	100
5. 사회복지시설안전	102
6. 교육시설안전	105
7. 자전거이용안전	105
8. 문화체육시설안전	108
9. 등산사고안전	110
10. 수상레저안전	111
11. 문화재안전	112
12. 사이버안전	114
13. 유도선안전	116
14. 농기계안전	116

제5장 결론	11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1
제2절 정책적 함의	122
참고문헌	125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업무(시책) 실태조사표 ..	129



표 차례

<표 2-1> 안전관리정책의 범위 및 유형	22
<표 2-2> 생활안전관리의 유형	23
<표 2-3>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선행연구의 비교	35
<표 3-1> 안전관리 분야별 주관기관과 유관기관	41
<표 3-2> 보행자안전대책 관련 예산	45
<표 3-3> 승강기안전대책 관련 예산	47
<표 3-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개선 관련 예산	49
<표 3-5> 물놀이 사고건수	50
<표 3-6>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관련 예산	51
<표 3-7> 유도선 관련 사고건수 및 피해규모	55
<표 3-8> 자전거 이용 안전대책 관련 예산	58
<표 3-9> 등산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규모	60
<표 3-10> 수상레저 규모 실태	62
<표 3-11> 수상레저 이용객 및 사고건수	63
<표 3-12> 수상레저안전대책 관련 예산	63
<표 3-13> 문화재안전사고 대책 관련 예산	65
<표 3-14> 사이버 범죄 통계	66
<표 3-15> 사이버안전대책 관련 예산	68
<표 4-1> 조사대상 자치단체	71
<표 4-2> 안전관리 정책별 평균 담당부서 수	73
<표 4-3> 안전관리 정책별 평균 협력(유관)부서 수	74
<표 4-4> 안전관리 정책별 평균 인력 수	75
<표 4-5> 안전관리 정책별 평균 자치법규 수	77
<표 4-6> 안전관리 정책별 평균 추진사업 수	78
<표 4-7> 안전관리 정책별 예산사업 비율	79

<표 4-8> 안전관리 정책별 사업수행방식 81

<표 4-9> 광역자치단체별 보행자안전 관련 정책 실태 82

<표 4-10> 광역자치단체별 승강기안전 관련 정책 실태 83

<표 4-11> 광역자치단체별 어린이놀이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 84

<표 4-12> 광역자치단체별 여름철물놀이안전 관련 정책 실태 .. 85

<표 4-13>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 86

<표 4-14> 광역자치단체별 교육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87

<표 4-15> 광역자치단체별 자전거이용안전 관련 정책 실태 .. 88

<표 4-16>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체육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 89

<표 4-17> 광역자치단체별 등산사고안전 관련 정책 실태 90

<표 4-18> 광역자치단체별 수상레저안전 관련 정책 실태 90

<표 4-19>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재안전 관련 정책 실태 91

<표 4-20> 광역자치단체별 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실태 92

<표 4-21> 광역자치단체별 유도선안전 관련 정책 실태 93

<표 4-22> 광역자치단체별 농기계안전 관련 정책 실태 93

<표 4-23> 기초자치단체별 보행자안전 관련 정책 실태 94

<표 4-24> 기초자치단체별 승강기안전 관련 정책 실태 96

<표 4-25> 기초자치단체별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련 정책 실태 .. 98

<표 4-26> 기초자치단체별 여름철물놀이안전 관련 정책 실태 .. 100

<표 4-27>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 102

<표 4-28>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 105

<표 4-29> 기초자치단체별 자전거이용안전 관련 정책 실태 106

<표 4-30> 기초자치단체별 문화체육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 108

<표 4-31> 기초자치단체별 등산사고안전 관련 정책 실태 ... 110

<표 4-32> 기초자치단체별 수상레저안전 관련 정책 실태 ... 112





<표 4-33> 기초자치단체별 문화재안전 관련 정책 실태 113
<표 4-34> 기초자치단체별 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실태 114
<표 4-35> 기초자치단체별 유도선안전 관련 정책 실태 116
<표 4-36> 기초자치단체별 농기계안전 관련 정책 실태 117

그림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2-1> 국가재난안전 관리체계	12
<그림 2-2> 안전관리정책의 범위 및 유형	20
<그림 3-1> 안전관리 분야의 기관별 네트워크	4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재난과 재해 관련 각종 사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정책 실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안전정책에 대한 기관별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복합적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정책 수행방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예방적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별 안전관리 관련 중점분야 및 역할의 규명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안전관리의 체계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안전정책 관련 연계성 및 역할 정립을 통하여 안전정책의 기반 정립에 기여하도록 함

2. 연구의 필요성

- 각종 대형·복합 재난에 사전·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된 안전관리 정책·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정책·사업의 수행방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안전관리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중앙행정기관 안전관리정책·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연혁, 정책·사업목적, 주요내용, 예산규모 등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직접수행 안전관리 정책·사업 현황
-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정책·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연혁, 정책·사업목적, 주요내용, 예산규모, 수행방법(직접, 지방보조금, 민간보조금 등) 등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자체 안전관리정책·사업 현황
 - 민간부문에 위임한 안전관리정책·사업 현황
-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안전행정부의 역할을 새로이 모색하고, 시사점을 파악하도록 함

2. 연구방법

- 우선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의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
 -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논문, 연구보고서, 정부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및 예산을 분석함
- 실태(현황)조사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
 - 조사내용은 정책분야별로 관련 조례 또는 규칙, 담당인원, 주요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직·간접), 사업구분(예산·비예산) 등을 포함함 (<부록 1> 참조)
 - 실태조사표에 기초한 조사는 담당공무원의 인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제2장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안전관리의 개관

제2절 안전관리정책의 의의 및 유형화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안전관리의 개관

1. 법적 근거

가. 설치이념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헌법 제34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실현 및 구체화되고 있음
 -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방지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서 국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체계 확립과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조)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1995년 제정된 「재난관리법」이 폐지된 이후 신설되었으며 일부 「자연재해 대책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03년 10월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었고, 2004년 3월 11일 법률로 발효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은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이 이원화되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

- 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원화된 대응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우리나라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령으로 재난 예방과 재난에 따른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음

(제2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나. 관련 기관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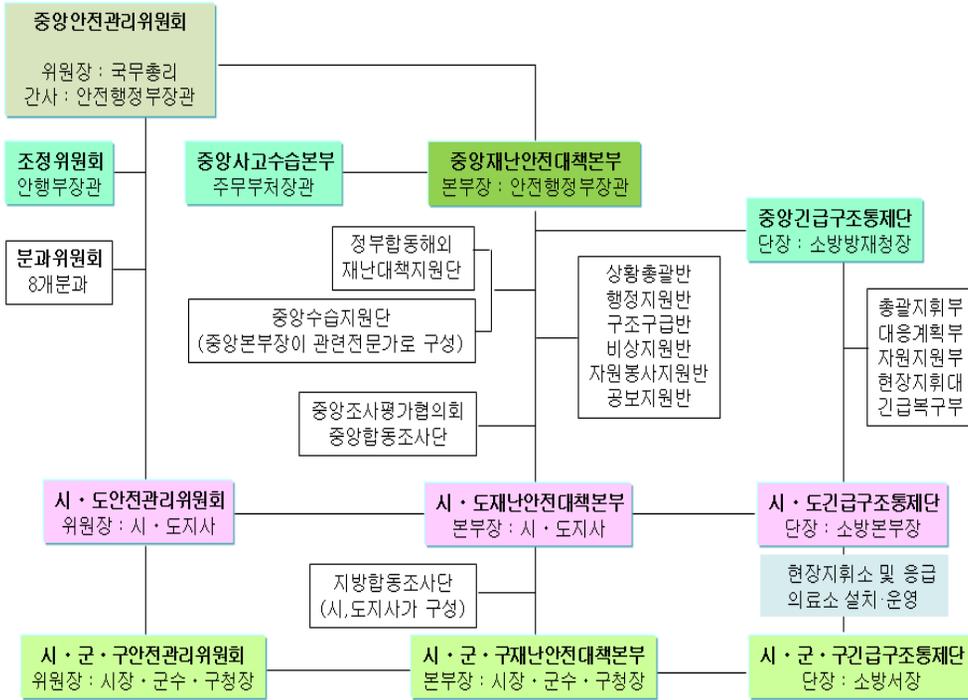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업무는 동법 제3조 제5호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재난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제3조제5호)¹⁾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해당되며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제3조 제5호)
- 또한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후의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이 명시되어 있음(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

1) 법 제3조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014. 2. 5)

여야 합(제4조)

- 안전관리와 관련된 주요 기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대책본부, 중앙 및 지방에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구성할 것을 규정함(제9조 - 제12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본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등으로 구성됨
- 한편,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시·군·구에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
 - 각 지역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수행하며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수행함. 또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를 협의·조정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등으로 구성됨
-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여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됨

<그림 2-1> 국가재난안전 관리체계



다. 안전관리기본계획(국가, 시·도, 시·군·구) 및 집행계획의 수립

- 각 중앙부처는 재난대책과 안전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이의 실행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제22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정부에서 5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재난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집행계획’으로 볼 수 있음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대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가 재난에 대응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중기계획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방안과 이의 실현을 위한 중점추

진과제들을 제시함

- 정부 및 부처 간 통합·조정 등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상호연계를 바탕으로 삼고 있음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재난관리, 안전관리, 전염병관리, 국가 기반보호와 같은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시·도 안전관리계획’과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등 세부대책을 수립·운영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목표 및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 제시되었던 분야별 대책을 각 연도에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2.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은 ‘안전’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출발이 시도됨
-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요약됨(이상경, 2008)
 - ‘안전’이란 자연적 혹은 인적·인위적 위험 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는 상태
 - ‘안전’은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로 좁은 의미로는 “사고방지”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사고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함(김맹선, 2008)
 - 또는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 불가한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절대적인 안전한 상태는 이상에 불과하며 시간, 환경, 개인적 요소들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수준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존재(성기환·최일문, 2014)

-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재난안전관리, 재난관리, 안전관리를 혼용하는 것으로 드러남
- 유병태 외(2013)에서는 재난 및 안전 분야에 대해 “재난, 위기, 사고, 사건 등 위해요인으로 인해 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제약되거나 안전한 상태가 파괴되는 등 사회의 비정상적 현상”을 “안전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이러한 재난 및 안전분야에 대한 연구는 “안전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시스템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음
- ‘안전’과 관련해서 실정법에서는 재난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생활안전, (공중안전), 소방안전, 교통안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의 분류체계로 고정되어 사용함(안영훈, 2010)
 - 이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구분을 시도함.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안보, 안녕과 보호, Security)의 의미가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의 의미로 축소됨
 - 안전관리는 정책적으로는 국민의 불안요소 제거와 생활불편 최소화도 안전에 포함되며, 개인적 건강과 국방·안보를 제외한 모든 것에 해당됨
- 법령에서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구분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관리를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
 - 사고 또는 위협의 반대 개념으로서 안전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음
 - 동법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의 정의로부터 안전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존 자연재난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생활안전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사실상 재난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생활안전(공중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실정법상 체계화하고 있음
- 한편,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의 범위로써 ①재난관리(자연·인적재난), ②국가기반체계보호, ③안전관리(생활안전), ④전염병대책(감염병, 가축전염병)의 4개 유형으로 분류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비해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범위 및 개념을 설정하고 있음. 이는 안전관리에 관한 개념을 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3. 재난안전관리의 특징

-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마다 이에 대한 범위가 달라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에 관한 개념의 부재는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 도출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박석호 외, 2013)
 -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 중앙부처의 개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고와 안전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판단되며 안전관리의 개념정립이 요구됨(김근영 외, 2008)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대응되는 기구 및 조직의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됨
 -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이 중앙-광역-지자체에 동일하게 대칭적 구조로 조직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신속한 지휘 및 수습이 가능함(김은성 외, 200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산발적인 개별법의 존재로 인하여 재난안전에 관한 관리가 취약한 측면이 있음

-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는 해당분야 소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중이며 산하 안전관리기관에서 기준 및 안점점검을 담당하고 있음(오종우, 2013)
 - 정부의 각 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체계가 무분별하며 중복 및 통일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조성제, 2010)
 - 법령체계상 기본법 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법」 등 재난관련 업무의 중복과 분산되고 있음
- 한국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는 예방 이후의 재난관리(대비-대응-복구)에 초점을 두고 있음(김은성 외, 2009)
-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이며, 이들 조직은 재난발생 등 주요사안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 조직임
-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재정적 측면에서 재난의 발생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때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배분 과정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재난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발생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국가자원배분에 있어서 후순위에 있음(류상일·남궁승태, 2011)
 - 한편, 재난발생 이후 소요예산을 산출하는데 치중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사전적인 예산배정이 미흡함. 재난의 복구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재난에 대비한 재정보확보가 필요함(정극원, 2011)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예방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재난 발생이후 국가의 사후 지원 및 투자가 적다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재난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인이 존재(이재은, 2011)
- 재난발생시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재난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재난의 수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은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그 필요성은 증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관련 민간단체에 관한 법·제도는 미흡한 수준이며, 참여수준 또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이재은·양기근, 2004; 김은성 외, 2009)

제2절 안전관리정책의 의의 및 유형화

1. 안전관리정책의 의의

가. 안전관리정책의 수요증가

- 고령화, 도시화, 경제발전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로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며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고도의 경제성장은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킴
- 산업기술의 발달은 자연재해에 의한 위협의 감소를 이끈 반면 기술위험의 비중을 급격히 증가시킴(정기성, 2003)
 - 이러한 위협은 대응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특징이 있음
 -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대량위험(Grossrisiken)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피해의 복구가 용이하지 않음(정극원, 2011).
 - 재난관리체계의 확립과 대응책 마련으로 이러한 위협을 보다 감소시키자는 노력으로 안전관리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의 수립이 점차 대두됨
 -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측면에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호의무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음. 그러나 오늘날 안전관리에 대한 외연이 넓어짐으로써 이를 기본권 보호의 무성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최승필, 2012)
- 또한 재난 및 재해사고는 이전에 비해 피해가 대규모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지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광역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됨(최미옥, 2010)

나. 안전관리정책의 의의

-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존재
 -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연관이 있음(최승필, 2012)
 -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분야로서 국민의 안전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안전에 대한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1990년대 중반에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김판석·이재은, 1999; 고제혁, 2012)
- 안전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복구중심에서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중심에서 민관협력의 높은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이 필요

- 재난 및 사고의 규모 및 발생 빈도의 증가로 중앙정부 주도의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가 한계에 도달함
-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의 프로세스가 ‘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완화-예방-대비-대응-복구-적응’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전대욱, 2013)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지자체 간의 협력, 민·관 및 민·민 협력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

2. 안전관리정책의 범위 및 유형

가. 안전관리정책의 범위

- 유럽 등 선진국은 안전의 범주로서 전통적 재난관리 외에 “사고 및 손상 (injury)”을 포함함
 - 전통적 개념의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기술적 요인에 의한 인적재난과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분류됨(권영세, 2005)
 - 현행 기본법상 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인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박근혜정부의 안전관리는 전통적 재난과 사회 안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넓어짐
 - 국정목표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에서는 추진전략으로서 “(14)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5)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제시
 - 사회활동을 구성하는 인간, 시설·공간, 외부환경에 대해 개인적 손상(사회적 위해 포함), 사고, 중대사고, 재난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기존 인적재난과 생활안전의 경계가 모호한 시설안전, 소방안전, 교통안전(보행자, 차량), 산업안전(사업장, 근로자)은 사고로 구분하여 통합관리

- 재난(자연·인적·사회적)과 생활안전으로 양분할 경우 재난관리 영역이 비대해지며, 안전의 관점에서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연재해대책,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안전관리대책, 전염병대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생활안전에 국한되어 범위가 설정되고 있음

<그림 2-2> 안전관리정책의 범위 및 유형

안 전 관 리					
범주	개인	사회	시설		환경
			단위시설	네트워크 시설	
보호대상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법·질서 안전문화 정보이용	취약주거시설 다중이용시설 문화·체육·유원시설 교육·복지시설 교통시설(일반도로) 산업시설(사업장)	교통수송 및 물류시설 (철도, 항공, 항만, 지하철, 화물) 에너지공급시설 (전력, 가스, 석유, 전기, 유류, 가스) 국가기반시설 (통신망, 전산망, 금융)	국토환경 지구환경
완화대상		폭력(성, 가정, 학교) 인권(아동, 범죄피해자) 민생치안			자연재해 기후변화
피해유형	손상		사 고	중대사고	재 난
	손상(injury) 교통(보행·자전거) 식품	범죄 감염병	시설 교통 산업	대규모 폭발, 대형화재 국가기반체계 마비 유해화학·방사성 물질 확산	자연재난 및 중대사고 이상의 재난

나. 안전관리정책의 유형

-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에 따라 대부분 연구들은 안전관리정책의 법적인 내용의 분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재웅·김대호(2010)는 우리나라 안전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안전사고의 유형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정책의 재분류를 시도함
 - 안전사고의 유형은 국민생활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산업안전, 범죄안전 및 식품·보건안전 분야로 분류하고 이의 유형과 대책을 구분함
 - 생활안전은 국민복지생활(승강기안전, 어린이놀이터 안전, 재난취약계층안전, 다중놀이시설안전,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생활(보육시설안전, 유치원시설안전, 청소년수련시설안전, 학교시설안전), 여가생활(유원시설, 공연·행사장사고, 체육시설, 자살방지, 유도선안전) 등으로 세분화됨
 - 교통안전은 보행자(노인보호, 어린이보호), 교통시설(국도, 철도, 지하철, 터널 등)으로 분류함
 - 화재안전은 화재사고(문화재안전사고, 초고층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로 정의함
 - 산업안전은 건설(대형건설사고 예방 등), 유해성물질(유해물질관리 등)으로 구분
 - 범죄안전은 범죄(학교폭력, 아동성폭력, 어린이유괴)로 분류
 - 식품·보건·안전은 식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학교식중독사고, 식품안전관리강화), 보건(학교전염병예방, 어린이의약품안전) 등으로 유형화
- 박석호 외(2013)에서는 안전 분야에 대한 기존 분류체계의 보완점을 제시하면서 안전분야를 재분류하고 있음
 - 기존의 안전분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국가기반체계, 범죄, 생활안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각 항목별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함
 - 복합재난, 환경재난, 생활관련 질병, 국내외적 위협(테러, 영토침입), 시설물안전, 사회인프라 안전, 보건 및 식품안전, 소비자 안전 등이

신설될 것을 제시

- 또한 전문가 조사 결과,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여야 할 주요 안전관리 분야는 범죄, 생활안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국가기반체계 순으로 나타남

○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에서는 생활안전에 국한하여 안전관리의 범위 및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2-1> 과 같음

<표 2-1> 안전관리정책의 범위 및 유형

세부대책 분야			
재난안전관리	국가기반체계	안전관리	전염병
풍수해대책 (설해·해일) 낙뢰대책 가뭄대책 황사대책 적조대책 산불방지대책 교통재난대책 (항공·철도·도로·해상·교통시설) 폭발·대형화재 대책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대책 독극물·환경오염사고 대책 산업재해대책 해외재난대책 (재외공관 등) 해외재난대책·해외재 난사상자 지원대책·해외 관광객 안전대책·해외 건설현장 안전대책·북한방문국 민안전대책) 재난방송대책 방재기상대책	에너지대책 (전력·가스·석유, 전기·유류·가스) 통신망보호대책 (통신재난) 전산망보호대책 교통수송대책 (철도·항공·화물· 도로·지하철·항만) 금융전산시스템 대책 보건의료서비스 대책 원자력안전대책 (원자력안전·방사능 방재) 환경대책 (소각장, 매립장) 식용수대책 (담·정수장)	보행자안전대책 승강기안전대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책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사회복지시설안전대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육시설) 교육시설안전대책 (학교시설·연구실· 유치원시설) 유·도선안전대책 자전거이용안전 대책 문화체육시설안전대책 (유원시설·공연장· 체육시설) 등산사고안전대책 수상레저안전대책 문화재안전사고대책 사이버안전대책	전염병대책 가축전염병대책

- 한편, 이재은·유현정(2007)은 생활안전의 유형을 안전위기의 발생·피해 범위(협소, 중·광범위), 생활안전책임주체(개인, 사회)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 2-2>와 같음
- 이와 같은 생활안전의 유형화는 관련 정책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피해범위가 협소하고 개인이 책임주체인 <유형 I>에는 취약소비자 안전위기와 생활경제안전위기 등이 해당됨
 - 피해범위가 중·광범위적이고 개인이 책임주체인 생활안전 <유형 II>에는 교통생활안전위기, 직업생활안전위기, 학교생활안전위기 등이 포함됨
 - 피해범위가 협소하고 사회가 책임주체인 <유형 III>의 경우 생활식품 안전위기, 생활용품안전위기, 생활건강 안전 위기 등이 해당됨
 - 피해범위가 중·광범위적이고 사회가 책임주체인 <유형 IV>에는 생활 시설안전위기, 생활환경안전위기, 생활기반안전위기 등으로 구성됨

<표 2-2> 생활안전관리의 유형

구분		국민생활안전 책임 주체	
		개인	사회
국민생활 안전위기 발생 및 피해 영향범위	협소 범위	<유형 I> 취약소비자안전위기 (노인, 어린이, 장애인, 가정 위해요소 안전위기 등) 생활경제안전위기 (실업, 파산)	<유형III> 생활식품안전위기 (수입식품, 영·유아 및 어린이 식품, 축산물·가공식품 등) 생활용품안전위기 (공산품 안전사고) 생활건강 안전 위기 (보건안전, 의·약품 등)
	중·광 범위	<유형 II> 교통생활안전위기 (자전거, 자동차, 보행자 사고) 직업생활안전위기 (사업장·비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위기) 학교생활안전위기 (학교 시설 및 환경에 의한 사고, 급식사고, 교통사고, 교육과정수행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고)	<유형IV> 생활시설안전위기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놀이시설 등) 생활환경안전위기 (환경호르몬, 식수오염) 생활기반안전위기 (금융사고, 전력사고, 공중보건마비, 에너지부족 등)

자료: 이재은·유현정(2007)을 인용 및 재구성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대다수의 연구들은 법·제도적 관점에서 법률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논의한 연구들은 간헐적으로 존재함.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채경석, 2004; 최미옥, 2010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통해 분석(문현철, 2008; 김은성·안혁근, 2009)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인식(박동균, 2008)을 분석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현황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률을 중심으로 현황분석이 이루어져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특히, 실태분석의 타당성 결여는 이후 도출되는 개선방안 또한 적실성이 결여되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실태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은 재난관리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연구들이 ‘재난안전관리’,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으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연구들을 일부 포함하여 검토함

1. 재난·안전관리제도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 재난·안전관리제도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한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오종우(2013)은 국가 안전관리관련 법·제도를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안전관리 실태 사례조사 및 문제점을 검토하며 우리나라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분야의 사업분야를 가스, 교통, 항공, 생활, 생체, 철도, 방사선, 보안, 레저, 산업, 해양, 원자력, 소방, 인프라, 시설물, 식품, 위험물, 재난, 수자원, 건설의 20가지 부문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법률을 검토
 - 관련 법령의 빈도를 검토한 결과 시설물(15), 산업(11), 원자력(9), 가스(9), 교통(9), 식품(8), 해양(7), 인프라(7) 및 철도(7) 등과 생활(3), 재난(3), 소방(3), 보안(4) 및 건설(4) 등에 비해 2-3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함
 - 한편, 부처별 법·제도의 제정은 국토교통부(21), 산업통상자원부(7), 소방방재청(16), 안전행정부(14), 보건복지부(13), 원자력안전위원회(12) 순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부처에서는 미흡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임
 - 이러한 문제들은 법체계 및 업무의 분산과 총괄조정기능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정의와 안전관리책임기관 간 통합 및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형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
- 이재은·양기근(2004)은 재난관리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통적 관료제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

- 하면서 시민참여, 국가, 시장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언급하고 있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체제로 만든 재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재난관리는 시민, 정부, 지역 내 기업 및 시민단체가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한편, 인적·물적·장소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행정 네트워크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정극원(2011)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의 규범 내용을 분석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개별법령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일부 제시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단일 계층구조에 의해 지휘 및 지도가 가능하여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면이 있지만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조 등 재난관리 절차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제시함
 - 응급대책과 관련하여 실행력이 미흡하며 강제대피조치권의 발동 이전의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등에 대한 발동형식 등이 규정되지 않음(시행령 제50조)
 - 긴급구조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나타나는 대형재난에 관한 방안이 부족함
 - 재정적 측면에서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의 충당을 위한 법령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등을 사전에 비축할 필요성이 존재함
- 정기성(2003)은 재난의 유형을 일상적 재난과 비일상적 재난으로 분류한 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의 설립을 위해 정책 및 기획차원, 일상적-비일

상적 재난관리 집행체계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함

- 정책 및 기획차원에서 재난관련법체계를 조직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일원화 및 통합하여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일상적 재난의 경우 재난관리조직을 통합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중복 업무를 제거할 것이 요구됨
- 비일상적 재난은 기존의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조직간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조직 간 네트워크 상의 통합과 같은 실질적인 통합관리의 구축이 필요함

○ 정윤한(2013)은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재난관리체계가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재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훈련 및 학습이 필요하며 중앙-지방간에 수직적·수평적으로 각 정부단위에서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강화가 요구됨
-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 및 보충하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함을 지적함
- 기관 간 협력 및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 통신망’과 같은 통신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 조성제(2010)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도, 조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현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 명시된 각종 정의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관리기관의 업무중복,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지나친 세분화를 지양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법률 제정이 요구됨
-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국가차원과 지방차원으로 구분하여 분

석함.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적재난, 자연재해, 국가기반재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별 재난관리체계의 조직은 완전통합형(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을 소방으로 통합하여 운영), 부분통합형(자연재난, 인위재난을 소방방재본부와 건설기획국에서 부분적으로 운영), 분산관리형(재난업무를 소방과 방재로 분리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조직체계는 소방방재청이 조직의 장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의 혼선을 초래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이원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휘체계의 규정이 미흡하며, 다수의 경우 재난관리 업무가 분산되는 측면이 보이고 있음을 지적함
- 결과적으로 재난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방에 일임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과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주는 정부간 역할분담이 명확해질 때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2. 재난·안전관리정책의 기능 및 역할

- 권건주(2012)는 지역의 재난특성과 주민밀착형 생활환경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재난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실태분석을 실시함
 - 실태조사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적, 조직적, 인적, 재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 법률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통합형 지역 재난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시하였음. 또한 재난전담조직(재난안전관리과)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강화할 것을 제

시하였음.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의 강화 및 재난복구 예산의 일정액의 경상비 편성 등을 제시하였음

- 김석곤·최영훈(2008)은 기존 문헌에서 지방재난관리의 조직간 관계의 취약성에 대해 언급만 하고 있고 경험적인 연구는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원보유정도가 조직 간 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자원풍요집단, 중간집단, 빈곤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 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관리 자원의 보유정도에 영향을 받지만 조직간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음
 - 한편, 자원보유 수준에는 무관하게 조직간 협력은 법·제도에 의해 일정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김은성·안혁근(2009)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재난·안전과 관련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을 지닌 재난관리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및 재난관리조직 분석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효과적 협력 방안을 제시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간 권한·자원·책임·예산 배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무원들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분석함.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 및 인사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를 통해 지방의 재난관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안전 및 재난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비상설 재난관리체계는 중앙-지방간 조직연동성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상설 재난관리체계의 경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신뢰관계가 잘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김은성 외(2009)의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중앙-지방간, 부처별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
 - 중앙-지방간 협력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중앙-지방간 재난관리부서 조직의 차이를 협력 미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함. 또한 각 정부마다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정부의 예산부족, 정부간 협력의 미숙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부처간 협력정도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음. 중앙정부는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부처간 협력정도가 양호(3.38/5)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여러 부처에 이중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이 미흡(2.42/5)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남
 - 지방 및 중앙정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연동성의 제고, 정부간 경제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인사적 측면에서는 순환보직의 조정(수평적 축소, 수직적 확대), 학습적 측면에서 훈련 및 학습기회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함
- 문현철(2008)은 국가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아직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함
 -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중앙정부 위주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유사한 위기관리행정시스템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으며,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인적·물적 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행정력의 낭비도 야기되고 있음
 - 또한 법률상 사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부족하여 강력한 사전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

- 박동균(2008)은 기초자치단체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재난체계와 안전관리체계의 통합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 안전관리의 전문성, 그리고 현장 대응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강릉시와 평창군의 재난관련 부서 공무원 92명을 설문조사하였음
 - 분석결과에 따르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예산 확충 및 조직 인력이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성 확보 및 법률·제도의 정비로 나타났음. 또한 재난과 관계되는 다양한 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의 역량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박동균 외(2011)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도출하고 있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를 중앙정부와의 관계, 관련 예산, 지역특성, 지역자원 활용 등의 측면에서 실태 분석을 수행하고 재난관리 시스템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를 시행함
 - 실태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중앙부처의 명령 및 지휘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복구예산의 70% 이상이 국고에서 지원됨을 보이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입지와 산업적 특성에 따라서 재난유형이 다를 수 있으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민간의 참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재난 발생 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초동대응의 미숙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또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서는 조직정비, 공무원의 전문성과 예산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지적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물적 자원의 미흡한 수준과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양기근 외(2006)는 선진국의 재난관리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중앙-지방간 명확한 역할분담, 체계적 재난 거버넌스, 재난관리의 전문성 확보 등으로 요약하고 있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문제점은 중앙과 지방의 연계체제가 미흡하며 관련업무의 분산 및 중첩, 자원의 중복투자,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 전문성 결여 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재난관리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며 민간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초동단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황실의 통합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재웅·김대호(2010)는 현재의 재난안전사고 관련 법률은 사전 예방에 있어 안전점검 및 검사기능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통제와 최적화 요인을 모색하였음
 -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은 부처별, 소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제정·운영되어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함
 -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요구되며 다양한 조직들의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평가 등의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정선호 외(2010)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지리적 요인(인구, 면적), 사회·경제적 요인(사업체 수, 자동차등록수, 도시화율, GRDP, 재정자립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관리·정책적요인(단체장 재선, 시스템 유형, 소방방재청 개청), 투입변수(인력, 예산, 장비) 등이 재난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함

- 재난관리 효율성을 예방·대응·복구효율성과 전체효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면적과 사업체 수, 국고 보조금, 인력, 소방방재청 개청은 대부분 유형의 효율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바탕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적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재정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교부세의 신설이 요구됨. 또한 대응단계에 효율성은 우수한 인력 확보와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산의 집행에 의해 제고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최승필(2012)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정책의 기능과 역할 및 민관협력수준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재난에 대한 예방 및 현장대응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권한위임과 재량영역의 확보가 필요함
- 재난발생시 지역소재 군, 경찰, 의료기관, 전기·가스 등의 서비스기관, 민간구조기관 등의 협조가 이루어짐. 이처럼 다양한 기관의 참여는 기관간 고유영역 주장에 따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관리시스템의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간 협력 및 민관협력의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함

○ 채경석(2004)은 재난관리체계의 유형은 유형별관리방식형과 통합관리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를 한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통해 법률체계, 중앙 및 지방의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함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유형별에 관리방식에 해당하며 보다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모두 통합형 재난관리체계로 개편이 필요함

- 재난관리체계의 개편과 동시에 재난신고의 통합관리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 요구됨
- 주민참여와 민간지원의 역할 및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조직이 공동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한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함

○ 최미옥(2010)은 독일의 함부르크시와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재난관리 체계를 비교분석 함. 구체적으로 제도, 법률, 관리기구, 재난대응방식 및 절차, 재난특성, 주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분석결과, 재난관리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의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이 유사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이 지휘보고체계상 어려움이 있어 재난발생시 권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강제성을 지닌 통합으로 인해 조직 내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체계적인 교육 및 재난훈련과 더불어 선진제도의 도입(재난유형별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위성정보 시스템,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최용호(2005)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로 정치적 환경,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공무원의 전문성, 재난대비체제수준, 체제간 협력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함

- 다중회귀분석 결과, 환경요인은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재난대비체제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재난대비체제수준, 관리체제간 협력 등은 재난관리 효율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고관리층의 관심과 지원이 수반되고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 업무가 수행될 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함. 또한 물적, 인적 자원의 확보와 담당부서간의 정보공유는 재난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는 중앙과 지방간 체계적인 업무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안전관리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하여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재난안전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부처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이나 업무를 파악하여 통·폐합해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대응이 재난 피해의 축소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가 요구됨

<표 2-3>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선행연구의 비교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방법	주요내용
재난·안전관리제도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종우 (2013)	사례분석	재난 및 안전분야와 관련된 법령을 사업분야 및 부처별로 분류한 뒤 제정된 법률 수를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과 부처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법·제도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총괄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이재은·양기근 (2004)	문헌분석 사례분석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조명하며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분석결과, 시민참여를 비롯한 국가, 시장, 시민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방법	주요내용
	정극원 (2011)	내용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범 내용을 분석하며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일부 제시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는 그 절차 및 대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복구예산의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됨.
	정기성 (2003)	문헌분석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의 설립은 정책 및 기획차원에서 기능중심의 일원화와 법령정비, 일상적 재난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조직 통합 및 기능강화, 비밀상적 재난관리는 분산된 업무 통합 등이 전제되어야 함,
	정윤한 (2013)	비교사례 분석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의 재난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의 비교분석 결과, 재난예방을 위한 훈련 및 학습의 강화, 재난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중앙-지방정부간 역할의 명확화, ‘재난 통신망’과 같은 통신시스템의 정비 등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조성제 (2010)	비교사례 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용어 및 개념정의, 중앙-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등으로 제시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정책의 기능 및 역할	권건주 (2012)	문헌조사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해 법적, 조직적, 인적, 재정적 실태분석을 시행한 결과 법률의 일원화, 재난전담조직의 기능강화,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예산편성 및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김석곤·최영훈 (2008)	분산분석 (ANOVA)	지방재난관리 조직의 자원보유정도가 조직 간 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자원풍요집단, 중간집단, 빈곤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관리 자원의 보유정도에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 보유 수준과 관계없이 조직간 협력은 법·제도에 의해 일정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은성·안혁근 (2009)	문헌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자원·책임·예산 배분, 정부별 공무원들의 신뢰와 네트워크, 재난관리조직 및 인사 리더십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분석결과 중앙의 명령과 통제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상설 재난관리체계의 경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신뢰관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김은성 외 (2009)	문헌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미국, 영국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하며 정부 및 부처간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 분석결과 중앙-지방간 재난관리부서 조직의 차이,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등이 협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협력체계의 강화는 조직 연동성을 높이고 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보임.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방법	주요내용
	문헌철 (2008)	문헌조사 내용분석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음. 정부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사전 예방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음.
	박동균 (2008)	설문조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난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분석결과, 예산 확충 및 인력확보, 전문성 확보 및 법률·제도의 정비, 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이 요구됨.
	박동균 외 (2011)	비교사례 분석 설문조사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은 재난 발생 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초동대응의 미숙함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남. 이를 위해 조직정비, 공무원의 전문성과 예산확보,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계방안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양기근 외 (2006)	문헌조사 인터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는 중앙-지방의 연계성 부족, 업무 분산 및 중첩, 자원의 중복투자,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 전문성 결여 등임. 해결방안으로 지방재난관리조직의 통합, 민간협력, 초동단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황실의 통합 등이 제시됨.
	이재웅· 김대호 (2010)	문헌분석	재난안전사고 관련 법률 법령은 부처별, 소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제정·운영되어 통합적인 정책수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안전관리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안전관리정책의 추진, 평가의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함.
	정선효 (2010)	자료포락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구·지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관리·정책적요인, 투입변수 등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결과 대부분 유형의 재난관리 효율성에서 면적, 사업체 수, 국고 보조금, 인력, 소방방재청 개청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최승필 (2012)	비교사례 분석	독일과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체계를 비교분석하며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정책의 기능과 역할 및 민간협력수준에 대해서 분석함.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와 중앙-지방간 통합관리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
	채경석 (2004)	비교사례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를 한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통합형 재난관리체제로 개편, 재난신고의 통합관리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주민참여와 민간지원의 역할 및 체계를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방법	주요내용
	최미옥 (2010)	비교사례 분석	독일과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재난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분석결과, 재난발생시 권한 충돌, 조직 내 갈등을 조정, 체계적인 교육 및 재난훈련, 선진제도의 도입 등이 요구됨
	최용호 (2005)	회귀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로 정치적 환경,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공무원의 전문성, 재난대비체제수준, 체제간 협력 등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함.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재난대비체제수준, 관리체제간 협력 등은 재난관리 효율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제3장

중앙부처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제1절 안전관리 실태분석의 개요

제2절 안전관리대책 실태분석

제3장

중앙부처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제1절 안전관리 실태분석의 개요

- 안전관리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을 주관기관과 유관기관으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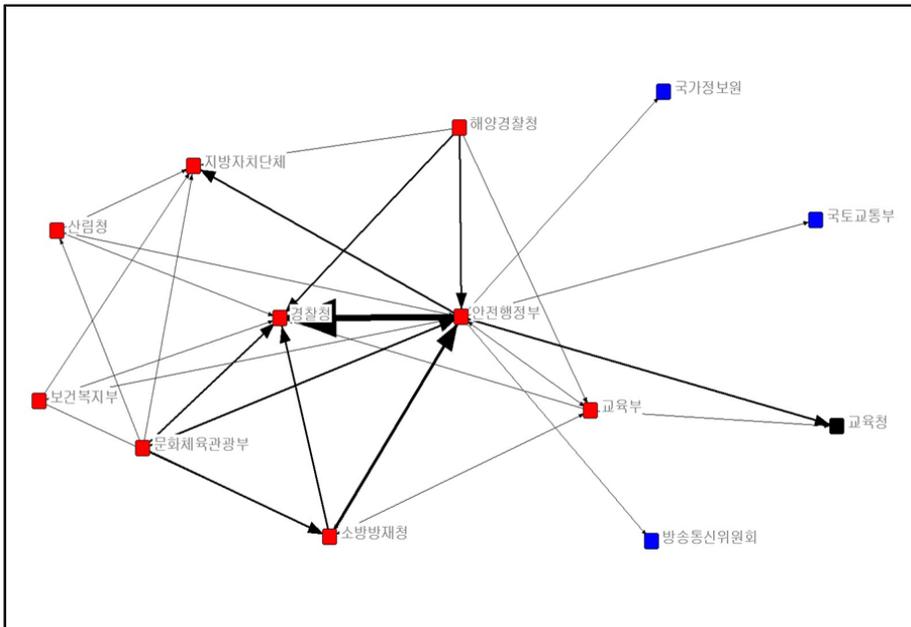
<표 3-1> 안전관리 분야별 주관기관과 유관기관

구분	주관기관	유관기관	비고
보행자안전	안전행정부	교육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승강기안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어린이놀이시설안전	안전행정부	교육부, 경찰청	
여름철 물놀이안전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교육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안전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안전, 청소년 수련시설안전 포함
교육시설안전	교육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교육청, 경찰청	유치원시설안전, 연구 실안전
유도선안전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경찰청	
자전거이용안전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시설안전	문화체육 관광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유원시설안전, 공연장 안전, 체육시설안전 포함
등산사고안전	산림청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수상레저안전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경찰청	
문화재안전	문화체육 관광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경찰청	
사이버안전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자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편(2013).

- 안전관리 분야의 주관기관과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3-1>과 같음
 - 안전관리 분야는 안전행정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 안전관리 분야의 기관별 네트워크



제2절 안전관리대책 실태분석

1. 보행자안전대책

가. 개요

-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차량통행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자의 권리보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이현주, 2009)
 -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은 그 수와 내용이 풍부하나 상대적으로 보행자와 관련된 법령은 미비한 점이 있음
 - 또한,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권리에 비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였음
 - 이에 따라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통해 사고에 따른 위험의 축소, 보행권 등을 법률상 보장하고 있음
- 차량의 증가로 인해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축소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위험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보행 중 사망자 비중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도로교통공단, 2013)
 - '1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6%(2,027명/5,392명)가 보행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부상자는 전체의 약 15%인 51,693명임. 이는 OECD 회원국의 보행 중 사상자 평균(17.8%)의 2배를 초과함
 - 보행 중 사상자의 연령층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사망자 중 47.3%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자 비율은 40대에서 50대의 연령층이 15.2%로(7884명)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행자안전관리대책의 주관부처는 안전행정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과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보행자안전관리대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과 같은 세부사업을 추진함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차량중심의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함
 - 보행자 도로의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의 단절이 있을 시 이를 연결 하는 등 보행공간의 확보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임
 - 도보와 차도의 분리가 불명확한 경우 보행공간을 확보
 - 차량의 속도 감속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판을 설치
 - 시설의 노후에 따른 정비 사업을 수행
 -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설치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명, 노면 등을 개선하고, 기존 로터리에서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에서 수립한 「201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포함된 대상지 중에서 사고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다. 소요예산

- 보행자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등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사업별로는 어린이보호 구역개선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예산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4년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 보행자안전대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안전한보행 환경조성	60,000	58,750	54,500	28,800	16,700
어린이보호 구역개선	95,535	78,748	42,151	37,500	9,000
교통사고 찾은곳개선	21,650	29,668	22,797	24,785	12,500
위험도로 구조개선	82,150	78,128	74,222	130,844	32,400
합계	259,335	245,294	193,670	221,929	70,600

2. 승강기안전대책

가. 개요

-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승강기"라 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의미함(제2조 제1호)
- 기존 대규모로 설치된 승강기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승강기 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함
 - 1988년 올림픽에 대비한 주택 100만호 건설로 인하여 대규모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그 후 승강기 노후화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별도 안전기준 및 검사방안 마련 등의 예방대책 미흡으로 승강기의 이용과 관련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시행이 미흡한 편임

- 사업의 추진은 안전행정부의 주관부처이며 유관기관으로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이 있음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승강기안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승강기안전대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각종 점검을 실시하며, 설치 및 운행과 관련한 단계별, 노후수준별로 구분하여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
 - 2011년 각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승강기번호표’를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승강기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 승강기안전문화 교육은 승강기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
 -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교육교재·홍보동영상 제작·보급, 교육강사 양성 지원
 - 어린이안전체험교실 및 지자체 각종 안전체험박람회 참여

다. 소요예산

- 승강기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개선 사업과 조사위탁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조사위탁 사업이 폐지되었음
 - 안전관리 개선 사업 예산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3> 승강기안전대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승강기시설안전 관리 개선	400	590	1,090	1,414	1,050
조사위탁	200	500	-	-	-
합계	600	1,090	1,090	1,414	1,050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대책

가. 개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의미함(제2조 제1호)
 -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의미함(제2조 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는 2008년 328건에서 2010년 903건으로 증가함(한국소비자원, 2011).
 -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해서 놀이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안전행정부 소관 하에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외국의 놀이시설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도입하여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
 - 어린이 놀이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 농어촌, 도서벽지에 위치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안전취약 계층 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검사비 및 시설 보수비 지원 방안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제도 및 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다. 소요예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소요예산은 2010년 4억원에서 2011년과 2012년에는 편성되지 않다가 2013년부터 1억 2천여만원으로 예산이 감소하였음
 - 2011년과 2012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의 규모가 타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축소되어 예산서에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임. 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 사업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표 3-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개선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어린이놀이 시설안전 강화	400	-	-	120	134
합계	400	-	-	120	134

4.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가. 개요

-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조법」, 「갯벌체험활동 등에 관한 관리 지침」, 「해수욕장 시설물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등에서 규정한 장소,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물놀이 시설(지역)과 그 외 불특정 다수인이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관리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물놀이 안전사고”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수욕장, 하천, 계곡 및 갯벌체험장 등의 행락지에서 물놀이 중 사상자 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고를 지칭함(소방방재청, 2011)
-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물놀이 사고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마다 안전사고의 발생이 빈번하며, 주로 여름철(6월-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표 3-5> 물놀이 사고건수

연도별	건 수	인 명 피 해			비고
		계	사 망	실 종	
계	528	572	539	33	
2006년	136	148	134	14	
2007년	131	143	124	19	
2008년	141	155	155	0	
2009년	67	68	68	0	
2010년	53	58	58	0	

자료 : 소방방재청(2011)

- 주관부처로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들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 교육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소방방재청은 여름철(6월-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 및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
 -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조끼, 구명로프, 구명환 등의 시설 설치 및 확대
 - 민간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통하여 물놀이 장소의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
- 해양경찰청은 인명구조장비의 추가 및 입욕통제, 해수욕장 안전관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함
 - 「122 긴급구조대」와 지역어민·레저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민·관구조대 편성·운영으로 각 해역별 신속 구조지원체계 구축
 -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물놀이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인력을 편성하여 물놀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

다. 소요예산

- 물놀이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예산의 규모는 2010년 2억원에서 2012년 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200	200	300	300	300
합계	200	200	300	300	300

5. 사회복지시설안전대책

가. 개요

- 청소년수련시설 및 보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기관 등을 포함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사회복지법」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안전점검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안전대책에 포함되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시설이용자 또한 광범위함. 따라서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필요함
 - 2011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은 5,340개소이며, 생활인원은 175,910명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기관은 753개소임
- 2013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어린이집)은 43,770개소이며, 보육아동은 1,486,980명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가 주관 기관이며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관련 기관들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의 감소를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를 추진함
 - 이를 통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및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시스템에 입력된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의 연락처를 활용하여 상황전파시스템 구축
- 정기적으로 시설 안점점검을 시행하며, 안전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
- 시설관리자들에게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하며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실시

다. 소요예산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예산서를 바탕으로 한 소요예산의 추정에서 관련 사업 및 예산이 확인되지 않음

6. 교육시설안전대책

가. 개요

- 학교시설, 연구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제6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제7조) 등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연구활동의 융합화·고도화 등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대
 - 한편, 유치원에서 많은 시간을 활동하는 유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노후된 재난위험시설(D·E급)로 인해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교육부가 주관기관이며 안전행정부, 교육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학교시설, 연구원시설, 유치원 등에서 모두 시설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 ‘학교시설안전대책’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학교시설안전 이력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함
 - ‘연구실시설안전대책’에서는 연구실의 지속적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의 기준을 개발·보급함
 - ‘유치원시설안전대책’에서는 해당 유치원의 자체적인 안전점검과 시·도교육청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점검계획에 의거 안전관리를 강화함

- 각 시설별 안전관리대책은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안전관리교육의 시행을 강화함
 - 각 시설에서 이용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를 고취시킴으로써 안전한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함
 -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약 75%가 학생의 안전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함(윤명오 외, 2007)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교육부령 제21호)을 통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동 시행령제2조)

다. 소요예산

- 교육시설안전대책과 관련한 사업이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예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하지만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안전대책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7. 유·도선안전대책

가. 개요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도선사업자는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운항 및 안전과 관련된 안내를 시행하여야 함
- 유·도선 이용객의 증가와 더불어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유·도선사고는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7년 인명피해가 2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2년 발생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유·도선사고의 증가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의식, 문화의 부재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표 3-7> 유도선 관련 사고건수 및 피해규모

연도	발생건수	인명피해 (명)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사망비율 (%)
2006	1	11	-	11	0
2007	3	20	-	20	0
2008	3	5	1	4	20
2009	-	-	-	-	-
2010	1	1	1	-	100
2011	-	-	-	-	-
2012	11	9	-	9	0

자료 : 「2012 재난연감」 참고

- 소방방재청은 ‘유·도선 안전대책’의 주관부처이며,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유관기관임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유·도선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과 지도감독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유·도선 사고 감소 및 안전 강화에 기여
 - 안전점검은 성수기 전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사업 면허, 이용객 집중시기)에 불시 지도·점검 실시
 - 안전기준에 맞게 사업자 이행사항을 확인하며, 기상변화에 대비한 안전운항대책을 마련함
 - 도선 영업시간의 탄력적 운용, 출·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 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유·도선 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시행함

- 수난사고 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가상훈련을 시행함
 - 시·도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훈련 및 시범 훈련을 실시함
- 사고 유형별 사고의 대응 및 수습체계, 인명구조체계의 구축과 관련 기관과 협력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유·도선 안전관리를 수행함

다. 소요예산

- 유도선안전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현재 사업으로 편성·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현재 내수면 유도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8. 자전거이용안전대책

가. 개요

- 환경보호를 위해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의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2006년 7,922건에서 2012년 12,970건으로 사고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95명, 부상자 13,270명인 것으로 나타남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서 자전거의 용어 정의 및 통행방법, 자전거 횡단도 이용자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방법,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주관부처)로 자전거안전대책의 총괄기관이며, 유관기관으로 국토부, 경찰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들 수 있음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도로 폭 확대 및 포장 색상통일과 같은 자전거 이용시설 규칙을 개정하며 자전거 제작 시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
 -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의 확충, ‘자전거 교통 장애물 정비’ 등 자전거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함
- 자전거 이용과 관련전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및 자전거 안전운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운행을 위한 올바른 운전수칙, 보호장비의 착용 등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를 실시
 - 자전거 안전운전 홍보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자동차 교통안전교육·운수종사자 교육 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다. 소요예산

- 자전거이용안전대책 관련 예산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련 예산은 현재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예산의 감소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초기에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나 이후 점차적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표 3-8> 자전거 이용 안전대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자전거 인프라구축	52,800	52,800	47,170	46,050	25,620
합계	52,800	52,800	47,170	46,050	25,620

9. 문화체육시설안전대책

가. 개요

- 여가 시간의 확대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확대되었으며, 이용 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음
 -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가 미흡한 경우, 시설이용 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증가함
 - 유원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관광진흥법」 제32조에서는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에서는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24조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공연법」 제11조에서는 공연장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재해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무대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관련 유관기관은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임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시설별로 유원시설안전대책, 공연장안전대책, 체육시설안전대책으로 구분됨
- 유원시설안전대책은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안전관리 실태점검, 유원시설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으로 요약됨
 - 관련 제도의 개선은 복수의 안전성검사기관을 돕으로서 안전검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시행, 유원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의 전면 개정 등 법·제도의 개선을 포함함
 - 유원시설 관리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함
- 공연장안전대책은 법정안전진단 제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지원, 법정안전진단 대상 공연장 안전체계 확보 지원, 기타 비등록 공연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
 - 법정안전진단에서 제외된 공연장은 시설의 설비와 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공연장 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매뉴얼, 가이드 등의 개발 및 보급
 - 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연시설과 각종 행사장에 사용되는 가설무대 등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다. 소요예산

- 문화체육시설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한 사업들은 다른 사업예산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혹은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0. 등산사고안전대책

가. 개요

- 여가시간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등산객의 증가를 이끌었으며 이에 대한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였음
 - 2009-2012년도 등산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며, '12년에는 '11년 대비 발생건수는 41.88%(1,777건), 인명피해는 29.77%(1,132명) 각각 증가하였음

<표 3-9> 등산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규모

	발생건수 (건)	인명피해 (명)	사망자 (명)	부상자 (명)	기타	사망비율
2009	2,366	1,765	68	1,702	-	3.57
2010	3,088	2,251	88	2,034	129	3.91
2011	4,243	3,802	90	3,712	1	2.37
2012	6,020	4,934	139	4,795	-	2.82

자료: 「2012 재난연감」참고

- 등산인구의 안전한 등산방법에 대한 숙지 미숙은 등산사고로 이어져 이에 대비하는 대책의 마련을 통해 사고를 감소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의 소관 하에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등산사고안전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등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등산로 정비, 등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의 확대, 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등산로 정비 시 관련 위험표지판, 위치표지판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며

폐쇄 및 우회등산로를 안내함

- 등산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악구조대 운영 및 등산이용객에게 올바른 안전한 등산 기초지식을 보급해 등산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산 문화를 확산함
- 등산로에 관한 정보(난이도, 위험도 등)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다. 소요예산

- 등산객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등산객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은 세부사업 정도의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예산을 통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1. 수상레저안전대책

가. 개요

-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주관부처이며, 안전행정부, 경찰청이 유관기관으로 수상레저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정책의 주무부서로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내수면 여객선·유도선에 대한 사고유형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수상레저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내수면의 안전관리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들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내수면의 선박 안전관리와 수난구호 업무는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음

-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수상레저안전관리법」이 마련되어 이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기구의 조종, 안전준수, 안전관리,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수상레저사업 등에 관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수상레저로 인한 안전사고의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대책은 크게 내수면에서의 안전관리와 해안에서의 안전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음
 - 특히, 유도선 관리에 있어 해양에서의 유도선은 해양경찰청이, 내수면에서의 유도선관리는 소방방재청이 관할하고 있음
- 수상레저 등록실태를 살펴보면, 사업장 등록수와 수상레저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864개이던 사업장은 2013년 현재 908개로 증가하였으며, 사업장 수상레저 기구도 2010년 9,719개에서 2013년 11,048개로 증가하였음. 특히, 수상레저는 해수면보다 내수면에서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수상레저 규모 실태

구 분	사업장 등록수(개소)			사업장 수상레저기구(척)			등록기구(척)
	합 계	해수면	내수면	합 계	동력	무동력	
‘13년	908	389	519	11,048	1,773	9,275	14,705
‘12년	914	368	546	10,598	1,771	8,827	12,175
‘11년	862	350	512	9,862	1,822	8,040	10,457
‘10년	864	353	511	9,719	1,831	7,888	9,343

자료 : 해양경찰청(2013)

- 수상레저 이용객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2010년 554만명이던 이용객수는 점차 감소하다 2013년 449만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수상레저 사고건수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 수상레저 관련 안전대책은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11> 수상레저 이용객 및 사고건수

구 분	연 간			성수기(6~8월)		
	이용객	사망 (실종)	사고 인원	이용객	사망 (실종)	사고 인원
'13년	449만명	6	35	300만명	2명	24명
'12년	392만명	7	35	245만명	3명	22명
'11년	406만명	6	26	187만명	2명	20명
'10년	554만명	5	32	346만명	3명	29명

자료 : 해양경찰청(2013)

다. 소요예산

- 수상레저안전대책과 관련된 예산은 2010년 6억 8천만원에서 2013년 11억 1천만원으로 증가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기존의 수상레저안전대책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전담하다가 이를 민간협회를 통해 추진하면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2> 수상레저안전대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상레저 관리운영	680	680	680	1,110	1,110
합계	680	680	680	1,110	1,110

12. 문화재안전대책

가. 개요

-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 중요하므로 안전점검을 통해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2008년 승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보존 및 유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문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형을 보전하여야 함. 또한 문화재 도난 및 도굴에 대비한 방지사설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도굴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문화재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14조에는 “문화재 관리기관은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할 것과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하에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경찰청과의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함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효율적인 방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
 - 중요문화재 방재시설의 구축(2007-2012년, 475건 중 371건 완료)
 - 4대 궁·종묘, 왕릉 경비 시스템 및 자동 소방 설비 구축
 -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486건), 문화재 지진 대응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상시 모니터링 및 경상관리를 위한 돌봄 사업 추진

- 도난, 도굴, 불법유통, 국외 밀반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활동의 강화, 법·제도의 개선,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자 교육 실시, 관세청 및 공항공사 등 국외반출 방지 협력기관 간 체계적인 협조
 - 19개 국제공항 및 항만, 국제우체국에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및 사범단속 활동 추진

다. 소요예산

- 문화재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2010년 10억 9300만원에서 2011년 9억 51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16억 9400만원에 달하고 있음

<표 3-13> 문화재안전사고 대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문화재안전관리 체계 강화	1,093	951	902	1,016	1,694
합계	1,093	951	902	1,016	1,694

13. 사이버안전대책

가. 개요

-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과 예방·대응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함(경찰청, 2014). 그러나 사이버 범죄 및 위협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함
 - 2013년 방송사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3.20 사이버테러’, 홈페이지 변조, 언론사 서버 파괴, DDoS공격 등 ‘6.25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보

를 위협하는 사이버 위협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

-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는 사이버공격을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 등으로 정함

○ 2004년 사이버 범죄 건수는 77,099건이었는데 2008년 136,819건으로 급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4> 사이버 범죄 통계

구분	총계			사이버테러형범죄			일반사이버범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4	77,099	63,384	70,143	15,390	10,993	11,892	61,709	52,391	58,251
2005	88,731	72,421	81,338	21,389	16,874	17,371	67,342	56,547	63,967
2006	82,186	70,545	89,248	20,186	15,979	17,498	62,000	54,566	71,750
2007	88,847	78,890	88,549	17,671	14,037	15,302	71,176	64,853	73,247
2008	136,819	122,227	128,635	20,077	16,953	17,649	116,742	105,274	110,986
2009	164,536	147,069	160,656	16,601	13,152	13,619	147,935	133,917	147,037
2010	122,902	103,809	111,772	18,287	14,874	16,177	104,615	88,935	94,995
2011	116,961	91,496	95,795	13,396	10,299	11,399	103,565	81,197	84,396
2012	108,223	84,932	86,513	9,607	6,371	7,239	98,616	78,561	79,274
2013	155,366	86,105	92,621	10,407	4,532	5,514	144,959	81,573	87,107

자료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자료

○ 사이버 범죄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침해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신종 범죄는 예방정책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이버위협에의 결과는 사이버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사이버공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공간에도 상상 이상의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큼(정준현, 2011)
- 안전행정부의 주관부처이며,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함

나. 사업 목적 및 현황

- 사이버 공격을 초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인프라를 강화하여 사이버안전 수준을 제고함
 - 중앙부처 소속기관에 DDoS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정기적으로 대응훈련 및 실전 해킹방어 훈련 등을 연 4회 실시함으로써 대응력 강화
- 사이버침해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및 취약점 분석과 더불어 정보보호 담당자의 보안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함
-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및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기반 구축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이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용 및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관련 내용 개정을 통해 국가사이버안전에 관련된 조직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다. 소요예산

- 사이버안전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은 2010년 약 123억원에서 2012년 약 200억원으

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4년 현재 약 106억원으로 감소하였음

<표 3-15> 사이버안전대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보보호인프라 확충	12,356	12,387	20,046	12,551	10,624
합계	12,356	12,387	20,046	12,551	10,62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제1절 실태분석의 개요

제2절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의 개관

제3절 광역자치단체 안전관리 실태분석

제4절 기초자치단체 안전관리 실태분석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제1절 실태분석의 개요

1. 조사의 대상

- 조사대상은 6개 광역자치단체(광역시 3개, 도 3개)와 30개 기초자치단체(시 10개, 군 10개, 구 10개)를 포함한 3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지를 배포하였음
 - 조사지에 응답한 자치단체는 28개 자치단체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1>과 같음

<표 4-1> 조사대상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시(2)	도(2)	시(9)	군(8)	구(7)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창원시, 포항시, 수원시, 원주시, 천안시, 군산시, 강릉시, 안동시, 오산시	양평군, 울진군, 거창군, 평창군, 예산군, 무주군, 단양군, 연천군	대전 서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서 구

2. 조사의 분야 및 주요 내용

- 조사대상분야는 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3개 분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농기계안전관리를 포함한 14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13개 분야는 보행자안전대책, 승강기안전대책, 어린이놀이시설안전대책,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사회복지시설안전대책, 교육시설안전대책, 유·도선안전대책, 자전거이용안전대책, 문화체육시설안전대책, 등산사고안전대책, 수상레저안전대책, 문화재안전사고대책과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함
- 조사대상의 주요내용은 담당조직, 인력의 수, 주요사업과 세부사업, 사업수행 방식(직접, 간접), 간접수행 시 수행기관, 예산사업 또는 비예산사업의 여부,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부담 주체별 예산액 등을 포함함

제2절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의 개관

1. 조직

- 각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부서 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6개의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분야에서 담당부서가 2.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시설안전관리가 1.93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가 1.12개 순으로 나타남. 이외의 분야는 대부분 담당부서 수가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안전관리 담당부서가 2.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가 2.25개, 어린이놀이시설안전이 1.25개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가 2.15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체육시설안전관리가 1.37개, 보행자안전 1.1개 순으로 나타나 광역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안전관리 정책대상별 담당부서 현황을 종합하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 사회복지시설안전, 문화체육시설안전의 경우 정책추진의 대상이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서간 정보공유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2> 안전관리 정책별 평균 담당부서 수

	광역	기초	종합
1. 보행자안전	1	1.1	1.05
2. 승강기안전	1	1	1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1.25	1	1.12
4. 여름철물놀이안전	1	1	1
5. 사회복지시설안전	2.25	2.15	2.2
6. 교육시설안전	1	1	1
7. 자전거이용안전	1	1	1
8. 문화체육시설안전	2.5	1.37	1.93
9. 등산사고안전	1	1	1
10. 수상레저안전	1	1	1
11. 문화재안전	1	1	1
12. 사이버안전	1	1.05	1.02
13. 유도선안전	1	1	1
14. 농기계안전	1	1	1
총합계	1.21	1.11	1.16

* 담당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외하여 평균을 산출함

- 안전관리 정책별 협력부서 수는 평균 0.76개로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서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주무부서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안전(2.24)과 보행자안전(1.52), 사회복지시설안전(1.29) 분야는 타 분야와는 달리 다양한 부서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협력부서의 수는 1.10으로 다양한 부서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2.00) 사회복지시설안전(2.00), 여름철물놀이안전(1.75), 수상레저 안전(1.67) 순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평균 협력부서 수가 0.68로써 주무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광역자치 단체의 결과와 다소 상이하게 어린이놀이시설안전(2.29)과 보행자안 전(1.54), 사회복지시설안전(1.15)은 복합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안전관리 정책별 평균 협력(유관)부서 수

	광역	기초	종합
1. 보행자안전	1.42	1.54	1.52
2. 승강기안전	0.75	0.56	0.59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2.00	2.29	2.24
4. 여름철물놀이안전	1.75	0.50	0.73
5. 사회복지시설안전	2.00	1.15	1.29
6. 교육시설안전	0.50	0.25	0.33
7. 자전거이용안전	0.75	0.20	0.29
8. 문화체육시설안전	1.50	0.56	0.67
9. 등산사고안전	1.00	0.29	0.44
10. 수상레저안전	1.67	0.33	0.60
11. 문화재안전	1.00	0.29	0.43
12. 사이버안전	0.00	0.47	0.39
13. 유도선안전	1.00	0.25	0.45
14. 농기계안전	0.00	0.64	0.54
총합계	1.10	0.68	0.76

-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1.6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교육시설안전(6.34)에 대한 인력투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안전(4.76), 농기계안전(2.20), 문화체육시설안전(2.14) 순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평균 1.98명을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투입하

고 있으며, 교육시설안전(14.85), 사회복지시설안전(3.78)과 문화재안전(3.38)의 인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등산사고안전(0.14)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0.31)에는 인력 투입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평균 1.56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안전(4.96)에 대한 인력투입이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농기계안전(2.23), 교육시설안전(2.08) 순으로 나타남. 반면 등산사고안전(0.62)이나 여름철물놀이안전(0.64)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안전관리 정책별 평균 인력 수

	광역	기초	종합
1. 보행자안전	1.42	1.47	1.46
2. 승강기안전	0.35	0.80	0.72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0.31	0.78	0.70
4. 여름철물놀이안전	0.35	0.64	0.59
5. 사회복지시설안전	3.78	4.96	4.76
6. 교육시설안전	14.85	2.08	6.34
7. 자전거이용안전	2.31	1.63	1.74
8. 문화체육시설안전	3.10	2.02	2.14
9. 등산사고안전	0.14	0.62	0.52
10. 수상레저안전	0.27	0.94	0.80
11. 문화재안전	3.38	0.71	1.22
12. 사이버안전	1.13	1.80	1.68
13. 유도선안전	0.53	0.70	0.66
14. 농기계안전	2.05	2.23	2.20
평균	1.98	1.56	1.64

* 교육시설안전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28명을 투입하여 전체 평균이 높아짐

2. 자치법규

- 안전관리 정책별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 실태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정책별로 0.26개의 조례와 0.05개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정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14개 정책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0.79), 자전거이용안전(0.71)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자치법규 제정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0.3개의 조례와 0.07개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자전거이용안전(1.5)분야에 가장 많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안전(0.75), 사회복지시설안전 및 문화재 안전(0.5) 순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평균 0.26개의 조례와 0.05개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시설안전조례(0.79)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자전거이용안전(0.71), 문화체육시설안전 및 보행자안전(0.4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규칙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규칙의 존재 여부는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규칙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현재의 조례제정 실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정책 실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즉,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정책이 중앙정부의 법률과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표 4-5> 안전관리 정책별 평균 자치법규 수

	광역시		기초		종합	
	조례	규칙	조례	규칙	조례	규칙
1. 보행자안전	0.75	0.00	0.42	0.04	0.42	0.04
2. 승강기안전	0.00	0.00	0.00	0.00	0.00	0.00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0.25	0.00	0.25	0.04	0.25	0.04
4. 여름철물놀이안전	0.00	0.00	0.21	0.00	0.21	0.00
5. 사회복지시설안전	0.50	0.00	0.79	0.17	0.79	0.17
6. 교육시설안전	0.25	0.25	0.04	0.00	0.04	0.00
7. 자전거이용안전	1.50	0.00	0.71	0.13	0.71	0.13
8. 문화체육시설안전	0.00	0.00	0.42	0.08	0.42	0.08
9. 등산사고안전	0.00	0.00	0.00	0.00	0.00	0.00
10. 수상레저안전	0.00	0.00	0.00	0.04	0.00	0.04
11. 문화재안전	0.50	0.25	0.08	0.04	0.08	0.04
12. 사이버안전	0.25	0.25	0.33	0.08	0.33	0.08
13. 유도선안전	0.00	0.00	0.00	0.00	0.00	0.00
14. 농기계안전	0.25	0.25	0.33	0.08	0.33	0.08
평균	0.30	0.07	0.26	0.05	0.26	0.05

3. 사업특성

- 정책별 평균 추진사업 수는 평균 2.74개이며 광역자치단체는 3.59개로 기초자치단체의 1.89개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정책분야별로 문화체육시설안전이 7.02개로 가장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안전(6.08), 자전거이용안전이 3.21개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한편 유도선안전과 농기계안전은 각각 0.67개, 1.17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안전이 평균 11.75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정책분야에 비해서 추진사업이 뚜렷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유도선안전관리 분야는 0.75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안전 사업이 4.67개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뒤이어 사이버안전이 3.17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교육시설안전에서 평균 0.33개의 가장 적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안전관리 정책별 평균 추진사업 수

	광역시	기초	종합
1. 보행자안전	3.25	2.79	3.02
2. 승강기안전	3	1.13	2.06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1.5	2.75	2.13
4. 여름철물놀이안전	2.5	1.79	2.15
5. 사회복지시설안전	7.5	4.67	6.08
6. 교육시설안전	4.5	0.33	2.42
7. 자전거이용안전	4	2.42	3.21
8. 문화체육시설안전	11.75	2.29	7.02
9. 등산사고안전	2.5	0.92	1.71
10. 수상레저안전	1	0.79	0.90
11. 문화재안전	3.75	2.00	2.88
12. 사이버안전	2.75	3.17	2.96
13. 유도선안전	0.75	0.58	0.67
14. 농기계안전	1.5	0.83	1.17
평균	3.59	1.89	2.74

- 한편, 정책별 예산사업 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사업이 총 6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67.16%, 기초자치단체에서 68.30%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행자안전이 94.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재안전이 93.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수상레저안전분야에서는 예산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보행자안전, 문화재안전, 사이버안전, 농기계안전 분야의 평균 예산사업 비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승강기, 수상레저, 유도선안전 분야의 예산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등산사고안전 분야의 예산사업 비율이 95.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전거이용안전(91.37%), 여름철물놀이 안전(88.37%) 등으로 타 정책분야에 비해서 예산사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한편, 수상레저안전 분야 내 예산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안전관리 정책별 예산사업 비율

(단위 : %)

	광역시	기초	종합
1. 보행자안전	100	88.05	94.02
2. 승강기안전	0	18.51	9.25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83.33	74.242	78.78
4. 여름철물놀이안전	90	88.37	89.18
5. 사회복지시설안전	53.33	38.39	45.86
6. 교육시설안전	72.22	37.5	54.86
7. 자전거이용안전	37.5	91.37	64.43
8. 문화체육시설안전	78.72	72.72	75.72
9. 등산사고안전	40	95.45	67.72
10. 수상레저안전	0	0	0
11. 문화재안전	100	86.66	93.33
12. 사이버안전	100	82.66	91.33
13. 유도선안전	0	21.42	10.71
14. 농기계안전	100	80	90
총합계	67.16	68.30	67.73

*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은 국비,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및 시도비임

- 정책별 예산사업 총예산 중 평균 의존재원액 및 비율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의존재원은 약 1억 4천만원으로 전체 안전관리 예산의 20.45%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의존재원은 약 1억 원이며, 전체 안전관리 예산의 24.39%로 의존재원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안전 관련 정책의 의존재원 비율이 74.25%로 매우 높은 편이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재안전(57.46%), 보행자안전(40.55%), 자전거이용안전(39.24%)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재안전이 75.0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안전(71.06%), 자전거이용안전(41.18%).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예산 중 평균 의존재원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의존재원이 없거나 예산이 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의존재원 비율은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사업수행방식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간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크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정책결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수상레저안전사업이 100% 직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81.82%)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사회복지시설안전(100%)과 승강기안전(86.6%)은 주로 간접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행자안전관련 정책의 93.10%가 직접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안전 정책(91.94%), 사회복지시설안전 정책(87.50%) 등이 대부분 직접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8> 안전관리 정책별 사업수행방식

(단위 : %)

	광역			기초		
	직접	간접	기타	직접	간접	기타
1. 보행자안전	15.38	69.23	15.38	93.10	1.72	5.17
2. 승강기안전	13.33	86.67	0.00	87.18	7.69	5.13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81.82	18.18	0.00	91.94	6.45	1.61
4. 여름철물놀이안전	0.00	0.00	0.00	0.00	0.00	100.00
5. 사회복지시설안전	0.00	100.00	0.00	87.50	6.25	6.25
6. 교육시설안전	0.00	0.00	0.00	0.00	100.00	0.00
7. 자전거이용안전	40.00	60.00	0.00	63.27	26.53	10.20
8. 문화체육시설안전	33.33	66.67	0.00	84.21	5.26	10.53
9. 등산사고안전	37.50	56.25	6.25	13.95	69.77	16.28
10. 수상레저안전	100.00	0.00	0.00	0.00	66.67	33.33
11. 문화재안전	16.67	66.67	16.67	83.02	15.09	1.89
12. 사이버안전	48.65	40.54	10.81	52.50	47.50	0.00
13. 유도선안전	25.00	25.00	50.00	80.95	14.29	4.76
14. 농기계안전	42.22	50.37	7.41	72.09	21.16	6.74
총합계	32.42	45.68	7.61	57.84	27.74	14.42

* 직접과 간접이 혼합된 방식은 기타에 포함함

제3절 광역자치단체 안전관리 실태분석

1. 보행자안전

- 광역자치단체의 보행자안전관리 정책은 주로 도로교통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협력부서의 경우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부서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와 강원도에서는 타 부서와의 협력 없이 한 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수행하고 있음

- 주요 조례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정하지 않고 있음
- 주요 정책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내용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와 강원도에서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지구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4-9> 광역자치단체별 보행자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도로교통철도과 교통안전	·도로철도과 도로정비	·교통운영과 생활교통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주요 협력부서	·도로교통철도과 도로관리	-	-	·건설도로과 도로관리 ·교통정책과 교통안전 ·시설정비과 도로관리
주요 조례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4.05.24)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000.10.26)	-	-	-
주요 정책	·보행환경개선지 구사업추진 ·소교량 보행시설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 안전영상(CCTV) 인프라 구축	·영주시 하마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영천시 터미널 연계 재래시장 보행환경 개선

2. 승강기안전

- 승강기안전관리 정책의 경우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의 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승강기안전점검 및 시설 유지와 관련된 정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음

<표 4-10> 광역자치단체별 승강기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기간산업담당관 자원관리	·기업지원과 기업사업화	·에너지자원과 자원관리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주요 협력부서	-	-	-	-
주요 조례	-	-	-	-
주요 정책	·승강기안전점검	·승강기안전점검	·승강기유지관리 실태조사	·승강기안전대책 마련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 주로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협력부서의 경우 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안전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반면 경상북도의 경우 안전총괄과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조사된 광역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정책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이며 안전관리 및 관련 정책의 홍보 등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4-11> 광역자치단체별 어린이놀이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권리 ·출산보육정책담당관 보육정책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문화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주요 협력부서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관리	·공원녹지와 공원운영 ·주택정책과 주택정책	·안전총괄과 안전문화	-
주요 조례	-	-	-	-
주요 정책	·도시공원내 놀이시설 설치검사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집 놀이터 기능보강 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

4. 여름철물놀이안전

- 여름철물놀이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안전총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에서만 재해예방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물놀이 안전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협력부서와의 연계 없이 정책을 추진 중이며, 부산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자치행정과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조사된 광역자치단체 모두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정책 사업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며, 물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자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4-12> 광역자치단체별 여름철물놀이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재해예방과 예방점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주요 협력부서	·자치행정과 갈매길도시환경	-	-	-
주요 조례	-	-	-	-
주요 정책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시연회 및 캠페인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안전사고 예방사업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물놀이 지역담당제 추진

5. 사회복지시설안전

○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주로 사회복지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로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만 타 부서와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안전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장애인,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력하고 있음
- 관련 조례는 대부분이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에서 청

소년 문화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각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4-13>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생활보장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자립지원	·여성가족청소년 과 청소년 ·저출산고령사회 과 출산보육	·복지정책과 복지기획, 생활보장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주요 협력부서	-	-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 장애인재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
주요 조례	-	·대전광역시 청소년 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 센터 운영조례	-	-
주요 정책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 및 보험 지원 ·건축물 및 비품 화재보험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 시설개보수 및 소방설비 구축

6. 교육시설안전

- 교육시설안전관리 정책은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서만 수행하고 있는데 모두 교육청 내 시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모두 협력부서 없이 하나의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만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은 학교시설의 안전 점검 및 시설의 개·보수와 관련된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음

<표 4-14> 광역자치단체별 교육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부산교육청 교육시설과 토목	-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시설관리	-
주요 협력부서	-	-	-	-
주요 조례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	-
주요 정책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정밀안전진단, 구조보강, 소방공사 등)	-	·교육시설안전점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학교 내 안전사고예방 시설 확충	-

7. 자전거이용안전

- 자전거이용안전관리 정책의 담당부서는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는 교통 및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 자전거담당이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도시토목, 도시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로 타 부서와의 협력없이 자전거이용 안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에서 환경정책과, 관광진흥과와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 관련 조례의 경우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자전거이용안전 정책의 주된 내용은 안전교육 및 자전거이용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및 도로의 정비,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5> 광역자치단체별 자전거이용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자전거 교통	·건설도로과 자전거	·지역도시과 도시토목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요 협력부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관광진흥과 관광기획	-	-	-
주요 조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주요 정책	·찾아가는 자전거학교 운영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실습 ·자전거이용시설 물 정비사업	·자전거초보자 안전교육 ·저전거보험 ·자전거이용시 설 정비	·자전거 이용자 안전에 위한 교통관련 법규전파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자전거 안전 홍보(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 ·자전거길 안전점검

8. 문화체육시설안전

- 문화체육시설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부산광역시과 대전광역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통적으로 관광, 체육, 문화시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안전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만 체육시설사업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조례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지 않았으며,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신고 및 허가 등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표 4-16>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체육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관광진흥과 관광산업 ·시민회관 ·문화회관	·관광산업과 관광산업 ·대전예술의전당 공연기획 ·문화체육시설과 체육시설	-	-
주요 협력부서	체육시설사업소	-	-	-
주요 조례	-	-	-	-
주요 정책	·시설물 안전진단 ·안전시설 보수공사	·유원시설업 신고 및 허가	-	-

9. 등산사고안전

- 등산사고안전 관련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본부의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에서만 토지자원과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지 않음
 -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악구급대, 시설 정비 및 보강 등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

<표 4-17> 광역자치단체별 등산사고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부산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대응구조	·대전소방본부 대응관리과 구조대책	·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구조	·경북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 구조
주요 협력부서	-	-	·토지자원과	-
주요 조례	-	-	-	-
주요 정책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산악구급함 설치 운영 ·시민산악구급 대 활동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산악위치표지판 국가지점번호 교체	·등산목안전지킴 이 운영 ·산악안전시설 정비,보강

10. 수상레저안전

-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내륙지방에 위치한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경제진흥과 내 산업수산담당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수상레저 안전 점검이 정책의 주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8> 광역자치단체별 수상레저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항만물류과 안전관리	-	·내수면지원센터 내수면사업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주요 협력부서	·경제진흥과 산업수산	-	-	-
주요 조례	-	-	-	-
주요 정책	·수상레저 등록 및 안전점검 ·수상레저안전 계획 수립	-	·수상레저안전지도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11. 문화재안전

-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안전관리 정책은 주로 문화예술과 내 문화재 담당이 수행하며 경상북도에서만 문화재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협력부서의 경우 강원도에서만 안전총괄과와 협력하여 문화재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조례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주로 문화재의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감시인력 배치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안전점검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표 4-19>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재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재	·종무문화재과 문화재관리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	·문화재과 문화정책
주요 협력부서	-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
주요 조례	-	-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주요 정책	·문화재재난방 지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안전경비 인력배치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 ·문화재 무인 경비시스템 운영 ·중요문화재 상주감시 인력 배치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문화재 재난 방지시스템 구축 ·문화재 적정 소방시설 설치	·문화재 재난 방지시스템 구축

12. 사이버안전

- 사이버안전정책은 정보화담당관 내 정보보호담당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례 및 협력부서는 전 광역자치단체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안전 정책의 경우,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

<표 4-20> 광역자치단체별 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유시티정보담당관 정보시스템 보호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	·정보통신담당관 정보보호
주요 협력부서	-	-	-	-
주요 조례	-	-	-	-
주요 정책	·사이버침해대응 센터 보안관계 사업	·사이버침해대응 센터 보안관계 사업추진	·사이버통합보안 관제 시스템 유지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도정종합정보실 및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

13. 유도선안전

- 유도선안전관리 정책은 강원도, 경상북도에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이 수행하며, 대전광역시는 재해예방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한편, 강원도에서만 건설과 내 수상안전담당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하고 있으며,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의 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유도선안전관리정책은 사업장의 안전점검 과 안전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음

<표 4-21> 광역자치단체별 유도선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	·재해예방과 예방점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주요 협력부서	-	-	·건설과 수상안전, 하천	-
주요 조례	-	-	-	-
주요 정책	-	·유선사업장 안전점검 ·유선사업장 종사자 안전교육	-	·유선 및 도선 안전점검

14. 농기계안전

- 농기계안전정책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만 수행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농기계안전 관련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강원도에서만 농기계 수리와 기술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농기계안전 정책은 재정적 지원과 물적 지원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음

<표 4-22> 광역자치단체별 농기계안전 관련 정책 실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담당부서	-	-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	·친환경농업과 식량대책
주요 협력부서	-	-	-	-
주요 조례	-	-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
주요 정책	-	-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 ·임대농기계 배송차량 지원	·경운기 등 저속운행 농기계 식별장치 지원

제4절 기초자치단체 안전관리 실태분석

1. 보행자안전

- 기초자치단체의 보행자안전 관련 정책은 교통과, 건설과 및 도로과 내 도로관리담당, 안전건설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협력부서는 교통 관련 부서, 도로과, 안전건설과 등의 담당부서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 관련 조례의 경우, 시가 군보다 더 많이 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수원시, 연천군), 강원도(원주시, 강릉시), 경상북도(안동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정책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3> 기초자치단체별 보행자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도로과 도로정비	-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기 오산시	·건설도로 도로정비	-	-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강원 원주시	·도로과 도로관리	·도로과 자전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인도정비사업
강원 강릉시	·건설과 도로시설	-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스쿨존과 연계이면 도로 안전개선사업
전북 군산시	·교통행정과	-	-	
경북 안동시	·건설과 도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북 포항시	·도로과 도로시설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개선
경남 창원시	·교통정책과 교통지원 ·도로과 도로시설	-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경기 양평군	·건설과 도로관리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경기 연천군	·건설과 도로	-	·연천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충북 단양군	·안전건설과 도로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충남 예산군	·건설교통과 도로관리	·건설교통과 도로시설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전북 무주군	·안전건설과 도로개발	-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경남 거창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	·건설과 도로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부산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교통운영과 교통운영	-	·보행기초시설 설치
대구 서구	·건설방재과 도로 ·교통과 교통행정	·경제과 일자리창출	-	·어린이 등하굣길 지도 ·도로 긴급보수
대전 서구	·교통과 주차시설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정비
대전 유성구	·교통과 교통행정	·교통과 주차시설	-	·어린이교통안전 체험학습 ·등하굣길지킴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광주 동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울산 중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안전건설과 토목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울산 남구	·건설과 토목담당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 ·보도정비사업

2. 승강기안전

- 승강기안전 관련 정책은 지역경제과 내 에너지담당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회계과(경기도 오산시), 안전건설과(전북 무주군), 에너지과(경북 포항시)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협력부서 없이 한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포항시와 경남 고창군에서 안전정책과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협력부서 수와 유사하게 관련 조례도 조사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정책은 승강기안전점검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내 기초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4> 기초자치단체별 승강기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관리	-	-	·승강기안전점검
경기 오산시	·회계과 청사관리	-	-	·승강기안전점검
강원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정책	-	-	-
충남 천안시	·천안박물관 관리,홍타령관	·지역경제과 에너지자원	-	·승강기 정기검사
전북 군산시	·지역경제과 에너지	-	-	·승강기안전점검
경북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과학	-	-	·승강기안전점검
경북 포항시	·창조산업에너지과 산업생활에너지	·안전정책과 안전정책	-	·승강기안전점검
경남 창원시	·경제정책과 에너지	-	-	·승강기안전점검
경기 양평군	·녹색성장사업과 재생에너지	-	-	-
경기 연천군	·지역경제과 녹색성장	-	-	-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충북 단양군	·지역경제과 자원관리	-	-	-
전북 무주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	-	-
경남 거창군	·승강기경제과 상공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	-
대구 서구	·경제과 에너지관리	-	-	·승강기안전점검
대전 서구	·일자리경제정책 실 자원관리	-	-	·승강기안전점검
대전 유성구	·지역경제과 상공	-	-	·승강기안전점검
광주 동구	·경제과 에너지관리	-	-	·승강기안전점검
울산 중구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	-	-	·승강기안전점검
울산 남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	-	·승강기안전점검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 기초자치단체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 정책은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과(대구 서구), 공원녹지과(울산 중구), 산림녹지과(경남 고창군)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협력부서는 복지관련 부서와 주민생활지원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 주택관리과(부산 해운대구,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등), 지역경제과(대전 유성구) 등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조례는 광주 동구, 경기 오산시, 강원 원주시, 강원 평창군, 경북 안동시 등에서 제정된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주로 놀이시설 설치 및 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25> 기초자치단체별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여성가족과 보육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경기 오산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건축과 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보험가 입, 설치검사, 안전교육)
강원 원주시	·안전총괄과 안전재난	·공원과 공원관리 ·복지정책과 보육지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강원 강릉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건축과 공동주택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충남 천안시	·안전총괄과 생활안전	·구 도시건축과 주택 ·구 산업교통과 공원산림 ·주 주민복지과 가족복지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북 군산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여성아동복지과 아동복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경북 안동시	·안전관리실 안전관리	주민생활지원과 위생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도시공원 CCTV 설치 ·배상책임보험 가입
경북 포항시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보육지원과 보육지도	-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경남 창원시	·안전행정과 국제안전도시TF	-	-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경기 양평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주민복지실 아동보육 ·생태개발과 주택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보험가 입, 설치검사, 안전교육)
경기 연천군	·안전총괄과	복지지원과 보육아동 ·산림녹지과 공원조성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강원 평창군	·안전건설과 안전관리	도시주택과 주택	·공동주택유지보 수지원조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충북 단양군	·안전건설과 안전관리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복지	-	-
충남 예산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 ·산림축산과 산림녹지 ·예산읍 도시건설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전북 무주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경북 울진군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관리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	-	-
경남 거창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	-	-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부산 해운대구	·안전총괄과 안전지도	·복지정책과 아동지원 ·건축과 주택	-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대구 서구	·도시관리과 공원녹지	-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대전 유성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여성가족과 보육관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	·어린이 놀이시설설치 검사 ·어린이공원 정비
광주 동구	·안전건설과 재난관리	-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울산 중구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	-	·도시공원 CCTV 설치
울산 남구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4. 여름철물놀이안전

- 기초자치단체의 여름철물놀이안전 정책은 안전총괄과, 안전건설과 등 안전관리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협력부서의 경우 관광과, 행정지원과, 건설과, 경제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부서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조례는 충남 천안시, 경기 연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무주군, 경남 거창군에서 여름철 물놀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물놀이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4-26> 기초자치단체별 여름철물놀이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	-	-	-
강원 원주시	·안전총괄과 안전재난	·관광과 레저관광	-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안전 홍보
강원 강릉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관광과 관광지도	-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요원 배치
충남 천안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	·소방서	천안시 여름철물놀이안전 관리 조례	·여름철물놀이안 전관리요원 배치
·전북 군산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관광진흥과 관광 시설	-	·인명구조장비 설치
경북 안동시	·안전관리실 안전관리	-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안전요원 운영
경북 포항시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	-	·안전요원 운영
경남 창원시	·안전행정과 국제안전도시TF	-	-	·안전요원 운영 ·안전시설물 설치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양평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	-	·물놀이 안전점검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경기 연천군	·안전총괄과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안전계도요원 운영 ·안전관리 장비구입
강원 평창군	·안전건설과 안전관리	-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요원 운영
충북 단양군	·안전건설과 안전관리	-	·단양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물놀이 안전관리 시설 설치 ·안전요원 비치
전북 무주군	·안전건설과 재난방재	·행정지원과 행정	·무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안전요원 운영 ·안전시설 설치
경북 울진군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관리	-	-	·안전요원 운영 ·안전시설물 설치
경남 거창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경제과 일자리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물놀이 안전 홍보 ·물놀이 안전요원 장비구입
부산 해운대구	·안전총괄과 안전지도	-	-	·물놀이 시설 점검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대전 서구	·안전총괄과 재난예방	-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광주 동구	·안전건설과 재난관리	-	-	·물놀이 시설 점검
울산 중구	·평생교육과 체육지원	-	-	·물놀이 시설 관리
울산 남구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건설과 하천관리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	·물놀이 시설 점검

5. 사회복지시설안전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안전 관련 정책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경북 울진군, 경남 창원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및 주민복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광주 동구, 울산 중구, 경기 수원시, 경기 양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원주시, 강원 강릉시, 전북 군산시, 경북 안동시 등에서 타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등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조례는 부산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경기 오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무주군 등에서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문화의 집 등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정책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사업 및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7>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	-
경기 오산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 ·가족여성과 보육지원, 보육시설	-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강원 원주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청소년 ·복지정책과 보육지원, 복지기획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강원 강릉시	·주민복지지원과 복지기획	·주택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과 ·여성가족과	-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전북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 청소년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경북 안동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	·주민복지과	-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경북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 복지시설 ·여성가족과 청소년복지	-	-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경기 양평군	·주민복지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	-
경기 연천군	·복지지원과 노인복지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 보육아동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강원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	-	·소방설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안전교육
충북 단양군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	-	-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충남 예산군	·주민복지실 여성가족	·안전관리과 안전관리	-	·청소년수련관 자체안전점검
전북 무주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 아동청소년	-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남 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 여성아동, ·체육청소년사업소 청소년	-	-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부산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 아동지원 ·주민복지과 자활지원 ·행복나눔과 여성청소년, 보육관리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대전 서구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여성가족과 청소년	-	-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대전 유성구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청소년, 보육관리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조례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화재사고예방 ·통학차량 안전관리
광주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복지과 출산보육, 아동청소년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경제과 에너지관리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어린이집 환경개선
울산 중구	·사회복지과 보육, ·여성청소년, 장애인복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디자인건축과 건축	-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울산 남구	·복지지원과 생활보장 ·자치행정과 청소년지원 ·여성가족과 여성정책, 장애인, 아동보육	-	-	·사회복지시설안 전점검

6. 교육시설안전

- 교육시설안전관련 정책의 경우 경기 수원시, 전북 군산시, 전북 무주군, 경남 거창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안전관리 정책분야에 비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안전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타 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조례 또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정책은 교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8>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	-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전북 군산시	·교육청	-	-	-
전북 무주군	·행정지원과 ·행정교육	-	-	-
경남 거창군	·행정지원과 ·시설지원	-	-	·교육시설안전 점검

7. 자전거이용안전

- 기초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안전 관련 정책은 도로 및 건설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도시건축 및 녹색성장사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부산 해운대구, 경기 양평군, 강원 원주시에서만 건설, 도로, 도

시디디자인과 등 타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조례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평창군, 충북 단양군, 전북 무주군, 경북 안동시, 경북 울진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보험 가입, 안전교육의 시행 등으로 나타남

<표 4-29> 기초자치단체별 자전거이용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도로과 자전거 문화	-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경기 오산시	·건설도로과 도로정비	-	·오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보험 가입
강원 원주시	·도로과 자전거 문화	·도로과 도로관리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도로 정비
강원 강릉시	·건설과 자전거 도로	-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도로 정비
전북 군산시	건설과자전거정책	-	·군산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도로 정비
경북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	-	-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보험 가입
경북 포항시	건설과 건설행정	-	·포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보험 가입
경남 창원시	생태교통과	-	·창원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 보험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가입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이용시 설 정비
경기 양평군	·녹색성장사업 과자전거	·건설과 도로관 리	·양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안전시 설 설치
경기 연천군	·건설과 도로팀	-	-	·자전거 도로 정비
충북 단양군	·균형개발과 도시개발	-	-	·자전거 이용시 설 정비
충남 예산군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안전이용 캠페인
전북 무주군	·건강휴양도시 과 도시디자인	-	-	-
경남 거창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	-	·자전거이용 활 성화에 관한 조 례	·자전거 안전시 장비 보급 ·자전거 안전시 설 정비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도로 정비
부산 해운대구	· 교통 행정 과 주차시설	·도시디자인과 도로보수 ·건설과 토목	·부산광역시 해 운대구 자전거이 용 활성화에 관 한 조례	·자전거 이용시 설 정비 ·자전거 도로 정비
대구 서구	·건설방재과자 전거문화	-	-	·자전거 이용시 설 정비
대전 서구	·건설과 토목	-	-	·자전거 이용시 설 정비
대전 유성구	·건설과 토목	-	·대전광역시 유 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도로 정비
광주 동구	·안전건설과 도 로관리	-	·광주광역시 자 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안전교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육장 및 시민 교육 지원
울산 중구	·안전건설과 가 로환경	-	·울산광역시 중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안전교 육 실시
울산 남구	·건설과 토목	-	·울산광역시 남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보험 과입 ·자전거 안전교 육 실시

8. 문화체육시설안전

- 문화체육시설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관
광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타 부서와 협력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해운
대구,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 경남 창원시 등으로 주로
시설관리와 관련된 부서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시설안전관리 정책과 관련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타 정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시설안전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은 관련 시설의 안전점검과
시설 관리 및 보수 등임

<표 4-30> 기초자치단체별 문화체육시설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문화관광과 예술	-	-	-
경기 오산시	·문화체육과 체육	-	-	·체육시설 유지 보수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강원 원주시	·문화체육사업소 시설	·관광과 관광개발 ·건강체육과 체육시설	-	·시설 안전점검
충남 천안시	·천안박물관 관리	·안전총괄과 생활안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조례	·공영장 운영 및 안전관리
경북 안동시	·체육관광과 체육시설	-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과 예술, ·체육지원과 체육행정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시설 안전점검
경남 창원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	-	·시설 안전점검
경기 양평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	-	-	·전기안전 소방, 화재보험 가입
경기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 체육진흥	-	-	·체육시설 유지 보수
충남 예산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공공시설사업소 문예회관	-	·예산군 문예회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북 무주군	·문화체육관광과 지역축제, 문화예술, 스포츠마케팅	·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시설 안전관리
경남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시설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설 유지보수
부산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문화제 ·세계시민사회와 생활체육	·늘푸른과 푸른 도시, 공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공연장 재해예방 조치 ·무대시설 안전 점검 ·체육시설 관리
대구 서구	·서구문화회관 시설	-	-	·시설 안전점검
대전 서구	·문화체육과 체육	-	-	·시설 안전점검
대전 유성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체육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의	·공연장 안전대책 마련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보수
광주 동구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
울산 남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	-	·울산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체육시설 안전 점검

9. 등산사고안전

- 기초자치단체의 등산사고안전관리 정책은 주로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소방정책과(경남 창원시), 도시관리과(대구 서구)에서 추진하기도 함
 - 타 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충북 단양군이 유일하며, 안전건설과와 협력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등산사고안전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31> 기초자치단체별 등산사고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	-	·등산로 정비
전북 군산시	·산림녹지과 공원	-	-	
경남 창원시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대응전략	-	-	·조난위치 표지목 교체
경기 양평군	·산림과 산림보호	-	-	·등산로 정비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연천군	·산림녹지과 공원관리	-	-	·등산로 정비
충북 단양군	·산림녹지과 환경녹지	·안전건설과 안전관리	-	·등산로 정비
전북 무주군	·산림녹지과 공원조성	-	-	·등산로 정비
경남 거창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	-	-	·등산로 정비
대구 서구	·도시관리과 공원녹지	-	-	·등산로 정비
대전 서구	·공원녹지과	-	-	·등산로 정비
대전 유성구	·공원녹지과 산림	-	-	·등산로 정비
광주 동구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	-	·등산로 정비
울산 중구	·공원녹지과 산림녹지	-	-	·등산로 정비
울산 남구	·공원녹지과녹지	-	-	·등산로 정비

10. 수상레저안전

- 기초자치단체의 수상레저안전관리정책은 안전총괄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체육관련 부서(경북 포항시, 경남 거창군)와 지역경제 관련 부서(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 타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무주군, 경북 안동시, 경북 포항시 등으로 안전관리부서 및 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관련 조례의 제정은 조사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수상레저안전관리정책은 주로 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으로 나타남

<표 4-32> 기초자치단체별 수상레저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점검	-	-	-
전북 군산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	-	-
경북 안동시	·안전관리실 안전관리	·안동임하호수 운관리사무소	-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경북 포항시	·체육지원과 해양스포츠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경기 양평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	-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경기 연천군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충북 단양군	·안전건설과 하천관리	-	-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전북 무주군	·안전건설과 하천관리	·안전건설과 재난방재	-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경남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정책	-	-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부산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해양수산	-	-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대전 서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	-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대전 유성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	-	-
울산 남구	·지역경제과 농수산	-	-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11. 문화재안전

- 문화재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문화관광과 및 문화체육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타 부서와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무하며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재안전관련 정책의 주된 내용은 주요 문화재의 안전점검과 보수 및 정비, 안전시설의 설치 등으로 나타남

<표 4-33> 기초자치단체별 문화재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문화관광과 문화시설	-	-	·안전시설 설치
경기 오산시	·문화체육과 문화	-	-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강원 원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재	-	-	-
전북 군산시	·문화예술과 박물관관리	-	-	-
경북 안동시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	-	-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문화재안전점검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과 문화재	-	-	·문화재 지킴이 활동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경남 창원시	·문화관광과 문화재	-	-	·문화재안전시설 구입 ·문화재 보수
경기 양평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	-	-	·안전시설 보수
경기 연천군	·문화관광체육 과 문화재	-	-	-
충남 예산군	·문화체육과 문화재	-	-	·문화재 보수 수리
전북 무주군	·문화체육관광 과 문화예술	-	-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경북 울진군	·문화관광과 문화재	-	-	·문화재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경남 거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재	-	-	-
부산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문화축제	-	-	·문화재안전점검
대전 유성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	-	·문화재안전점검 ·문화재 보수공 사
광주 동구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정책	-	-	·문화재안전점검
울산 중구	·문화공보실 관광	-	-	·안전시설 설치
울산 남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	-	·문화재안전점검 ·안전시설 설치

12. 사이버안전

- 기초자치단체의 사이버안전 정책은 대부분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보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담당하기도 함
 -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등과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강릉시, 경북 안동시, 포항시, 울진군 등임
 - 사이버안전 정책과 관련된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강원 원주시, 무주군, 경북 안동시 등에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정보통신보안 강화를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 보수, 사이버보안통합관계센터 설치 등의 정책 등이 수행되고 있음

<표 4-34> 기초자치단체별 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정보통신과정보통신	·도시안전통합센터	-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경기 오산시	·정보통신과정보통신	-	-	·정보통신보안시스템유지보수
강원 원주시	·정보통신과정보기획	-	·원주시지역정보화조례	·악성코드 유포방지 ·개인정보 강화 ·행정망 보안강화
강원 강릉시	·정보통신과정보기획	·정보통신과행정정보	-	·사이버보안통합관계센터운영
경북 안동시	·공보전산실정보산업, 행정정보	행정지원실 총무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보안시스템 구축
경북 포항시	·정보통신과행정정보	도시계획과 지적	-	·정보보호시스템운영 ·사이버침해사고처리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남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 실 통신	-	-	·정보통신 보안강화
경기 양평군	·총무과 전산정보	·총무과 정보통신	-	·정행정정보시스 템 보안 유지
경기 연천군	·자치행정과 전산정보팀	-	-	-
충북 단양군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	-	·행정내부망 관리
충남 예산군	·총무과 정보통신			·방화벽시스템 구축 ·시군구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전북 무주군	·행정지원과 정보통신	-	·무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
경북 울진군	-	정보통신담당관 실 인터넷운영	-	-
경남 거창군	·행정과정보화	-	-	-
부산 해운대구	·기획조정실 전산정보	-	-	·개인정보보호 강화 ·홈페이지 보안강화 ·네트워크 보안 강화
대구 서구	·문화공보과 전산운영/정보통 신	-	-	·정보보안 및 사이버침해방지 추진 ·디도스 대응체계 구축
대전 서구	·기획공보실 정보화	·자치행정과 총무	-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대전 유성구	·회계정보과 전산	-	-	-
광주 동구	·회계정보과 정보운영	-	-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울산 중구	·총무과 정보관리	-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정보보안 강화
울산 남구	·도시계획과 전산정책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정보보안 강화

13. 유도선안전

-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도선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안전건설과, 안전총괄과 등의 안전관리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강원 원주시에서만 건설방재과에서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타 부서와 협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도선안전 관련 조례 또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은 주로 유도선안전점검을 주된 내용을 삼고 있으며, 안전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부분적으로 수행됨

<표 4-35> 기초자치단체별 유도선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경기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 안전기획	-	-	-
강원 원주시	·건설방재과 건설행정	-	-	-
전북 군산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	-	·유도선안전점검
경북 포항시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	-	·유도선안전점검
경기 연천군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	·유도선안전점검
충북 단양군	·안전건설과 하천관리	-	-	·유도선안전점검 ·유도선안전교육
경남 거창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	-	-

14. 농기계안전

- 기초자치단체의 농기계안전관리정책은 주로 농촌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기도 연천군, 경북 안동시, 포항시, 울진군에서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농기계안전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주로 경상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몇몇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농기계안전정책의 주요 내용은 농기계안전교육, 안전장치 설치 등으로 나타남

<표 4-36> 기초자치단체별 농기계안전 관련 정책 실태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강원 원주시	·농촌지원과 농업기계	-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농기계안전교육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
전북 군산시	·농정과	-	-	-
경북 안동시	·농정과 농산	·유통특작과 과수화훼	-	·안전장치 설치
경북 포항시	·농촌지원과 농기계	·세정과 세입관리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경남 창원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농기계안전교육
경기 연천군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경영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농기계안전교육
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과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
충북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경영	-	-	·농기계안전교육 ·안전장치 설치

	담당부서	주요 협력부서	주요 조례	주요 정책
충남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농기계안전교육
전북 무주군	·기술지원과 농기계관리	-	-	-
경북 울진군	·친환경 농정과원예특작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	·안전장치 설치
경남 거창군	·농축산과 농기계관리	-	·거창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농기계안전교육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안전관리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대상은 국가안전기본계획의 세부대책 분야 중의 하나인 안전관리 분야(13개)를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의 실태를 분석하였음
 - 중앙부처는 각종 백서, 연감, 예산결산서 등을 활용하여 실태를 분석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표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기계안전대책을 포함한 총 14개 세부 분야를 분석하였음
- 제2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개관, 안전관리정책의 의의 및 유형화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 선행연구는 재난·안전관리제도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재난·안전관리정책의 기능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 제3장에서는 중앙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13개 안전관리대책을 개요, 사업목적 및 현황, 소요예산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음
-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4개 안전관리대책(농기계안전 포함)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음

- 분석은 조사지에 응답한 4개 광역자치단체(광역시 2개, 도 2개)와 24개 기초자치단체(시 9개, 군 9개, 구 7개)를 포함한 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제2절 정책적 함의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함
- 각종 안전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 분야의 역할 및 주요내용은 기관별, 분야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관리대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안전관리대책이 여러 개의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어서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일이 많으며, 다른 부서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할과 위상의 강화가 필요함
- 안전관리대책이 여러 개의 부서에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서 통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총괄과 중심이 되고, 다른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유관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대책이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버넌스 체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이동이 상하반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에서 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0.26개의 조례와 0.05개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임
-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각종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관련 대책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수준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나 지침을 작성·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우수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안전관리대책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가 지방의 여건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관리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은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현재 제도를 이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합동평가에 시책으로 포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시스템 또는 포털을 구축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처럼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자치단체별로 안전관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자치단체별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고제혁. (2012).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분석: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2(2): 1-25.
- 권건주. (2012).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5): 15-32.
- 권영세. (2005). "특집: 재난재해관리시스템;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과 정책방향." 「지역정보화」, 35: 29-37.
- 김근영 외. (2008).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개편 방안」 서울: 안전행정부.
- 김대환. (1998), 「돌진적 성장이 낳은 이중위험사회」, 「계간사상」, 10(3): 26-45
- 김맹선. (2008). 「항공안전관리체계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석곤·최영훈. (2008).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자원보유 인식과 협력에 관한 연구: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1):131-151.
- 김은성·안혁근. (200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안전 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은성·정지범·안혁근. (2009).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판석·이재은 . (1999). “시설안전관리의 정부규제개혁 방향: 안전논리와 경쟁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1(1): 87-105.
- 도로교통공단. (2013). 「2012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 류상일·남궁승태. (2011). “재난안전 관련 법제 분석: 언어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7(6), 29-46.
- 문현철. (2008).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4(1): 84-104.
- 박동균. (2008). “재난관리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분석과 합의”. 「한국행정논집」, 20(1): 289-312.
- 박동균·양기근·류상일. (201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 박석호 외. (2013). 「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및 정책방향 조사」
- 성기환·최일문. (2014). “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운영사례”. 「한국위기관리논집」, 10(2): 327-354.
- 소방방재청. (2011). 「물놀이 안전 매뉴얼」
- 소방방재청. (2013). 「2012 재난연감」
- 안혜원·류상일. (2007).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10): 183-190.
- 양기근·정원희·강창민. (2006).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개선 방안 : 통합형 재난관리 조직설계”.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545-564.
- 오종우. (2013). “국가 안전관리 기능강화 방안 연구”. 「한국사지리지리학회지」, 23(3): 167-184.
- 유병태 외. (2013). 「재난 안전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마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윤명오 외. (2007). 「교육시설안전 심층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이상경. (2008).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한반도선진화재단 주례세미나」
- 이재웅·김대호. (2010). “재난안전관련 법령과 감독기관 통합을 위한 안전제언”.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8-81.
- 이재은. (2011).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한국위기관리논집」, 7(6): 1-16.
- 이재은·양기근. (2004). “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6-363.
- 이재은·유현정. (2007).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국민생활 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 방안 모색”. 「한국위기관리논집」, 3(2): 1-17.
- 전대욱. (201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약)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지방행정연구원
- 정극원. (2011).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 「유럽헌법연구」, 9: 333-357.

- 정기성. (2003). “재난관리 행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6(1): 213-247.
- 정선호·송병주·권경환. (2010).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방식이 재난관리시스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3): 385-406.
- 정윤한. (2013). “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운영사례”. 「2013 국가통합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 정준현. (2011). “국가사이버안전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국가정보연구」, 4(2): 7-45.
- 조성제. (2010).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2): 1-18.
- 채경석. (2004).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국가간 비교 - 바람직한 재난관리 체계의 모색”, 「지방정부연구」, 8(4): 129-145.
- 최미옥. (2010).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115-142.
- 최승필. (2012).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외법논집」, 36(1): 17-35.
- 최용호. (2005). “지방정부의 사전대비 재난관리체제 효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31-150.
- 한국소비자원. (20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실태조사」
- Cornall, Robert(2005). “New Levels of Government Responsiveness for ‘All-Hazards’: the Management of Natural Disasters and Emergencies”,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4(2): 27-30.
- Heinrich, C. (2002). "Outcomes-base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Implications for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6): 712-725.
- McEntire, David A. & Mathis, Sarah(2007). “Comparative Politics and Disasters: Assessing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Contributions”, McEntire, David A.(ed.). *Disciplines, Disaster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Concepts, Issues and Trends from the*

- Research Literature.* Charles C. Thomas Publisher: Springfield, Il, 178-195.
- Miller, DeMond Shondell & Rivera, Jason David(eds.)(2011). *Comparative Emergency Management: Examining Global and Regional Responses to Disasters.* Florida: CRC Press.
- O'Brien, Geoff & Read, Paul(2005). "Future UK Emergency Management: New Wine, Old Skin?",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14(3): 353-361.
- Peacock, Walt G.(1997).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Disaste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15(1): 117-133.
- Perry, Ronald W. & Quarantelli, E.L.(eds.) (2005). *What Is a Disaster? New Answers to Old Questions.* Bloomington, IN: Xlibris Corporation.
- Quarantelli, E. L.(1987). "What Should We Study? Question and Suggestions for Researchers about the Concept of Disas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5: 7-32.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업무(시책) 실태조사표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업무(시책) 조사표

본 조사표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특·광역시/도와 시·군·구 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관리 분야별 실태에 대한 충실한 자료 제시 및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1. 안전관리의 세부대책 중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안전대책(예: 유·도선 안전대책, 농기계안전대책)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서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존 서식을 복사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세부분야는 순서(1 - 14)대로 묶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분야별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경우, '기타 의견'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별첨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조사표 뒤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사표 관련 문의는 박해육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02-3488-7337)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작성 기준 및 유의사항

분야 1. 보행자안전대책 (예시)

담당 부서	명칭 ()실/과/단/소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②	()실/과/단/소 ()담당/계
	인원 (①)명		()실/과/단/소 ()담당/계
관련 조례명	()		최초시행일 ()
관련 규칙명	()		최초시행일 ()

주요 사업(내용) ③	세부사업 ④	사업(업무) 수행방식 ⑤			위임기관				사업 구분 ⑧		소요예산 (단위: 천원) ⑨						기타 의견 ⑩		
		직 접	간 접	기 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 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⑥ ○					○									
					⑦ 공단														

①: 인원은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인원(정원 기준)을 의미함. 예를 들어 1명이 다른 업무를 1가지 또는 2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행자안전대책을 수행하는 경우 0.5명 또는 0.33명으로 표기해 주세요.

- ②: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내부부서를 의미함. 부서가 여러 개인 경우 최대 3개의 부서명을 기입해 주세요.
- ③④: 안전관리 세부대책 관련 주요사업은 귀 자치단체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주요(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고, 세부사업은 주요사업의 하위 단위인 개별사업을 2-3개(우선순위, 사업규모 고려 필요) 제시하시면 됩니다.
- ⑤: 사업(업무) 수행이 직접 수행과 간접 수행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과 ‘간접’의 공란에 모두 ○ 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⑥: 위임기관(상단)의 경우 해당하는 공란에 ○ 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⑦: 위임기관(하단)의 경우 관의 명칭을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개의 기관이 관련된 경우 명칭을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⑧ 사업(업무)이 예산 사업인지 비예산 사업인지를 구분하여 해당하는 공란에 ○ 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⑨ 예산사업인 경우, 국비, (특광역시·도비, 시군구비로 구분하여 금액(단위: 천원)을 기입해 주세요 (2012년-2013년 결산 기준, 2014년 계획 기준). 예산이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⑩ 기타 의견란에는 업무 수행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입해 주세요.

분야 1. 보행자안전대책 ~ 14. 농기계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실/과/단/소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실/과/단/소 ()담당/계
	인원	()명		()실/과/단/소 ()담당/계
				()실/과/단/소 ()담당/계
관련 조례명	()		최초시행일	()
관련 규칙명	()		최초시행일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 접	간 접	기 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 예산 사업	예 산 사업	2012		2013		2014				
											국 비	시 도 비	시 군 구 비	국 비	시 도 비	시 군 구 비		국 비	시 도 비